

‘CSR을 넘어’ 연속토론회

1차 | 사회통합과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책임’

10.20(목)14:3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의원 김종석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최**

국회CSR정책연구포럼

(대표의원 홍일표)

후원

Contents

모시는글	김종석 국회의원 -----	2
기조발제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책임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5
주제토론	기업의 사회책임 -----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25
	노조의 사회책임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33
	법조계의 사회책임 -----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	47
	언론의 사회책임 ----- 심재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91

모시는 글



김종석 국회의원

새누리당 | 여의도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종석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성장과 통합을 위해 주체별 사회책임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마련한 <'CSR을 넘어' 2차 연속토론회> 그 첫 번째 자리인 "사회통합과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책임(SR)'"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을 큰 충격과 고통에 빠뜨린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등을 비롯해 기업과 언론, 노조,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불거진 사건들로 '사회적 책임' 논란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사회책임' 하면 우리는 대부분 '기업의 사회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떠올립니다. CSR은 기업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투명경영·봉사 등에 앞장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많은 나라는 경제적·윤리적 책임까지 포함한 CSR 활동을 공시하도록 권장하고, 나아가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CSR을 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기업들은 CSR을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개

념을 달리해야 할 때입니다. CSR이 외부의 강제에 의해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업에게만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CSR에 편중되어 여타 주체에 대한 사회책임(SR)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자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SR은 CSR에서 'C(Corporate)'를 삭제한 것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노조·시민단체 등에도 사회적 책임이 적용되도록 한 개념입니다.

사회책임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의 공동의 의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직의 성장과 발전이 가속화될수록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와의 관계를 위한 사회윤리 준수가 필요합니다. 각 주체가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만큼, 의무와 책임 의식을 높여야만 통합과 성장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주제에 발제를 맡아주신 조동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하셔서 기업, 노조, 법조계, 언론이라는 우리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각 주체의 사회책임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실 김정호 교수님, 김대호 소장님, 박인환 교수님, 심재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연속토론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국회CSR정책연구포럼과 홍일표 대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회통합과 지속성장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우리 모두의 사회책임에 대한 고견들이 가감없이 오가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토론 내용을 토대로 여러 가지 측면을 꼼꼼히 살피고, 통합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20
국회의원 김종석

<기조발제>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책임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책임의 균형과 조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Beyond the CSR)-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1. 문제 제기

책임(責任)은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制裁)”를 의미한다. ‘선택에 따른 책임’, ‘행위에 따른 책임’이 그것이다. 그리고 책임은 행위의 귀속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보편적 규범’을 전제로 한다. 책임의 범위가 행위 주체에 국한되면 ‘자기 책임’이 되며, 간주체적(間主體的) 장(場)으로서의 ‘사회’로 확대되면 ‘사회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이 성립한다.

‘사회적 책임’하면 으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떠오른다. 이는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기업은 사회 속에 위치하고 그 어떤 주체보다 많은 이해당사자들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외연(外延)이 넓어지면서 주주가치 극대화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압축하면, 훌륭한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이 된다.¹⁾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 속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존재하고 그 같은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사회의 ‘지속발전’(S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해 필요하다면, 한 가지 되물을 것이 있다.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 여타 주체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가 그것이다. 사회의 지속발전(SD)을 위해서는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네 가지 범주가 있다.(Carrol, 1979) 첫째는 ‘경제적 책임’으로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일이다. 둘째는 ‘법적 책임’으로 관련 법규와 규칙을 지키는 일이다. 셋째는 ‘윤리적 책임’으로 정당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다. 넷째는 ‘박애적 책임’으로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것이다. 경제적 책임은 기업 본연의 책임이며, 법적 책임은 강제성을 갖는다. 윤리적, 박애적 책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기업의 평판과 충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의 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되물음'은 없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 사회는 여론에 편승해 기업에게 '별도의'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 왔다.

사회적 가버넌스(governance)의 관점에서, 책임부과는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권한 만큼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책임은 권한에 대한 균형추(均衡錘)이다. 따라서 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에게 계약 내용 이상으로 권한을 위임한 주체는 없다. 한국의 현실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관습법'과도 같다. 이는 한국적 현실에서의 반(反)기업정서와 무관하지 않다. 반(反)기업정서를 벗어나려면 기업을 '기업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²⁾

사회책임에 대한 국제표준기구(ISO)의 '초안'(DIS, Draft on International Standard)이 2010년 2월 14일 76개 참가국 중 79%의 찬성으로 '최종안'(FDIS, Final Draft on International Standard)으로 채택됐다. 그 후 2010년 9월 참여국을 대상으로 최종안에 대해 실시한 투표에서 93%의 찬성을 얻어 2010년 11월 1일 '국제표준'(ISO 26000)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제표준이 확정됐지만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우선 ISO 26000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공조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ISO 26000의 기본 취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야 한다"(beyond CSR)는 것이다. 즉 "기업, 소비자, 노조, 정부, 시민단체" 등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간의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ISO 26000은 사회적 책임의 '신(新)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ISO 26000은 다양한 이해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탈에서 검색하면, 기업은 '사회성, 공공성, 공익성'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의가 일반대중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기업은 '사회적 기구'(social entity)가 아닌, '계약의 복합체'(nexus of contract)로서의 재산권이다. '사회적 기구'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은 주주 외에도 정부나 이해관계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Allen, 1995) 이처럼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대중의 '눈'에 기업은 늘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된다. 반(反)기업정서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관계자들이 “지배구조 개선, 인권, 노동관행, 환경보호, 공정거래관행, 소비자이익, 사회개발(공동체 참여 및 개발)”의 7대 핵심가치(core subject and issue) 실현을 위해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ISO 26000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 우리 사회는 권리와 의무, 책임과 권한의 배분이 '비대칭적'인 사회이기 때문이다. 권한을 누리되 책임은 지지 않으려하고, 권리를 주장하되 의무수행에는 소홀해 왔다. 소통 부재(不在)와 갈등은 이 같은 비대칭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근한 사례로 사법권 강화와 독립은 꾸준히 강조되어왔지만 사법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합당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법의 사회적 책임'의 한 범주일 수 있는 '사법판단의 예측가능성'은 판사의 소신과 양심에 의해 가려졌다. 그리고 헌법적 가치에 도전하는 판결이 왕왕 목도된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은 그 자체가 사각지대였으며, 언론의 사회책임도 이념 편향의 벽을 넘지 못했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서 반(反)정부시위를 하기도 했다. 국가권력의 건전한 비판보다는 특정이념의 '전위대'(前衛隊)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것도 사실이다.³⁾ 또한 기업도 적지 않은 금액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하지만 빛이 나지 않는다. 시혜적인 사회공헌과 선언적인 윤리경영의 틀을 벗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직시(直視)하지 못함으로써 공감 받는 '기업시민'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이 글의 논지는 분명하다. '사회책임의 신(新)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사회적 비중'이 크면 당연히 그에 걸 맞는 사회적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 하지만 단지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책임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의 '공동의 의무'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사회적 책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각 주체들의 역할기대는 무

3) 천안함 폭침을 놓고 폭침이 아니라고 미국까지 방문해 항변한 시민단체의 행동이 그 전형이다.

엇이며 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의 문제의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2. 기업공격 방편으로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한국적 현실에서 ISO 26000은 단단히 오해되고 있다. ISO 26000의 기본 취지와 철학은 "전통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RS)을 넘자"는 것임에도 기업을 공격하기 위한 방편으로 오용되고 있다. ISO 26000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제와 집단소송제가 거론되고 있다.

1) 경제민주화 법안: '납품단가부당인하' 방지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경제민주화 법안은 '납품단가부당인하' 방지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집약된다. 일반대중의 눈에 대기업은 부당하게 부(富)를 축적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일감을 특정 기업에 몰아주고 한편으론 응당 줄 것을 주지 않았다면 오히려 부(富)를 축적하지 못한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재벌 대기업은 분노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상식적인 판단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납품단가를 후려쳤다"면 한국경제는 벌써 붕괴됐을 것이다.

납품단가 부당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가 의도적이고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으며 그러한 가해행위를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납품 가격 인하는 의도적 가해행위도 아니고 숨기거나 은폐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납품 가격을 둘러싼 이익충돌은 일방이 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가해행위'와는 다르다.

부당한 납품가격 인하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부당성'의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협상에 '당(當)과 부당(不當)'은 성립하지 않는다. 협상력의 차이를 부당한 차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는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대기업이 과도하게 납품가격을 인하하면 납품업자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제 발등을 찍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반대로 납품가격을 높게 쳐주면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려는 납품업자가 진입하게 된다. 중국에는 “겨우 먹고 살 만큼의 이익만” 남겨지며, '정상이윤'에 가까운 '정의롭고 도덕적'인 이윤이다. 이는 시장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가격 흥정은 '사적자치'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생각보다 작다. 그리고 협력업체가 대기업에 비해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다. 공급사슬에서 독점도가 높은 쪽의 협상력이 높기 때문이다.⁴⁾

물론 하도급 거래에 나타날 수 있는 기술 유출 가능성은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이 정당화되는 경우이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과 무관하게 'M&A를 통한' 기술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기술거래가 활성화되면 기술 탈취에 대한 시비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외국의 경우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주는 쪽은 대기업인 경우가 많다. 애플 등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이 기술을 사려고 하면 벤처기업을 잡아먹는다고 한다.

2) 제조물책임법(PL법)과 ISO 26000

ISO 26000에 대한 2번째 오해는 '제조물책임법'과의 혼돈이다. 한마디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제조물책임(PL)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02년 7월에 발효됐다. PL법은 소비자 피해구제 측면에서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제품결함을 입증해야 했지만 PL법 하에서는 제조자가 제품에 결함이 없음을 보여야만 면책된다. 예컨대 차량 급발진 사고의 경우 급발진 사고가 자동차 결함 때문이 아님을 자동차 제조회사

4) 2011년 5월 엔진 부품인 피스톤링의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는 유성기업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완성차업체들에 빚어진 생산차질의 사태는 이 사실을 잘 보여 준다.

가 입증해야 한다. 또한 PL법에 의하면,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품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이는 '무과실(無過失)책임주의'로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민법상의 '과실책임주의'를 뛰어 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논리에 비춰 볼 때 PL법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PL법은 제품결함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종의 가해행위로 간주하고 제품결함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조자에게 지움으로써 '불법행위 책임' 법리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의 거래는 당사자 간의 자유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조물의 결함은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는 '가해행위'와 다르다. 따라서 '계약의 특성'을 반영치 않은 불법행위 책임법리는 시장참가자의 유인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

피해자 구제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누구에게 배상책임을 물어도 차이가 없다. 제조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으면 제품가격의 인상을 통해 결함위험을 여러 소비자에게 분산시킨다. 이는 제조자의 '자가보험'으로, 소비자는 제조자가 정한 바대로 보험료를 강제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인정치 않을 경우 소비자는 개인보험을 통해 피해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두 경우의 소비자 실질부담은 같다. 따라서 피해자구제 측면에서 무과실책임이 더 우월하다 할 수 없다. PL법 하에서 소비자는 개인보험 대신 제조자의 자가보험에 든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PL법은 위험 분담을 제조업자와 소비자 간에 불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사회적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배상책임을 커질수록 제조업자는 안전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안전한 제조물일수록 가격이 비싸진다. 제품가격 인상은 이를 지불할 수 없는 소비자의 소비를 제한시킨다. 미국의 경우 무과실책임으로 인한 소송비용이 유아용 백신가격을 크게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자에 대한 배상책임 강화는 신제품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PL법은 제조자를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에 관여한 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유통업자나 부품공급의 과실에 의해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에게 배상책임을 청구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대기업은 부품을 시장에서 조달하는 대신 직접 생산하거나 유통까지 담당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수직결합'은 경제의 바람직한 분업구조를 해치고 경쟁을 제한시킨다. 경쟁제한이 소비자에게 득이 될 수는 없다.

기업에 비해 소비자의 교섭력이 약한 현실을 감안할 때 소비자 이익을 우선 하는 PL법은 대의명분에 부합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의명분이 아니라 경제논리다. 소비자를 위해 제정된 법령도 경제논리에 충실하지 못하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PL법의 궁극적 목적이 제조물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제품결함과 사용부주의를 형량(衡量)하여 제조자와 소비자 간에 배상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교량을 달리는 차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PL법은 교량 난간을 튼튼히 보강해 추락위험이 없으니 과속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난간보강 비용 이외의 숨은 손실은 난간을 보강해 상판(上板)이 무거워진 만큼 교량의 통과하중이 줄어든 것이다. 소비자 보호는 법의 개입이 아닌 기업간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이다. 법의 개입은 '숨은 손실'을 낳는다. 대중을 선동하는 세력의 눈에 '숨은 손실'이 보일 리 없다.

3) 한국 소비자의 이중 잣대

폭스바겐은 연비 조작과 배출가스 눈속임으로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기업이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2015년 11월 한국 진출 이후 가장 많은 판매를 기록했다.⁵⁾ 미국의 경우 2

5) “폭스바겐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한국”, 김정호, 한국경제신문, 2015. 12. 17일자.

자리 수의 할인판매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 판매는 24.7% 감소했다. 일본의 감소율은 31.8%이다. 환경부가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에서 배출가스 눈속임 장치를 확인하고 리콜 명령과 함께 1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은 판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선납금 없는 60개월 무이자 할부'라는 전대미문의 마케팅에 소비자가 환호성을 지른 것이다. 한국 소비자들은 기업의 도덕성은 관심 밖이다. 폭스바겐의 폭발적 판매 증가를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내 폭발적인 폭스바겐 판매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빈정댔다. "폭스바겐 사태에 항의 시위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 대기업 빌딩 앞이 시위꾼들로 북적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재벌가 집안싸움에, 대기업 영업사원의 막말 하나에 대규모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소비자들이 말이다."

만약 국내 자동차 메이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 손엔 수입차 핸들을, 한 손엔 명품 백을 들어야 얼굴이 서는 곳이 한국이다. 그리고 외치는 것이 '헬조선'이다.

3. ISO 26000의 구조

1) '사회책임'의 원칙

'사회책임 원칙'(principles of social responsibility)은 사회를 이루는 사회조직이 사회책임 행동을 선택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준칙'을 의미한다. '사회책임 원칙'은 <표-1>에 정리되어 있다.

'책임성'(accountability)은 행위주체의 의사결정과 행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투명성'(transparency)은 충실한 정보공개 의무를 의미한다. 예컨대 행위주체의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사회에 위해(危害)가 가해졌을 때, "분명하고, 정확하고 완전한 방법으로"(clear, accurate and complete manner) 그리

고 “합리적이고 충분한 정도”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적 행동’(ethical behavior)은 ‘정직과 형평 그리고 신뢰’(honest, equity and integrity)의 기준에 충실한 행동을 의미한다. ‘이해관계자 이익침해 금지’(respect for stakeholder Interest)는 다른 주체(조직) 또는 다른 조직의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해관계자 이익침해 금지’가 ‘이타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同) 원칙은 재산권의 존중을 의미한다. ‘법치’(rule of law)는 ‘힘의 재량적 집행’(arbitrary exercise of power)을 금지한 것이다. 어떤 조직도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인권존중’(human rights)은 당연 원칙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2) 사회책임의 ‘핵심주제와 이슈’

사회책임의 ‘핵심주제와 이슈’(core subjects and issues of SR)는 사회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외연’과 추구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핵심주제와 이슈는 “지배구조, 인권, 노사관행, 환경, 공정거래관행, 소비자 이익,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이며 <표-1>에 정리되어 있다. 사회책임 원칙에 의거해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책임의 핵심주제와 이슈’(의제)를 추구(실현)할 수 있다.

책임원칙과 핵심주제(가치)에 대한 관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조직(예컨대 기업)이 ‘사회책임 원칙’에 충실하게 사회책임 행동을 이행하게 되면,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관행의 정착, 환경 보호, 노사관행” 등의 사회책임 이슈가 충족된다. 하지만 조직의 사회책임 행동으로 사회책임의 모든 핵심주제들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책임 행동에 따라 핵심주제가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완성차 조립회사(조직 A)가 “책임성, 투명성, 이해관계자 이익침해 금지” 등의 사회책임 원칙을 충실히 따르면서 부품업자(조직 B)와 납품계약을 맺었다면, “공정거래관행, 소비자 이익, 노사관행(부품기업의 노사)” 등의 사회책임 이슈들을 개선시키게 된다. 반대 사례도 상정할 수 있다. 예컨대 ‘완성차 강성 노조’(조직 C)가 불법 파업을 벌였다면, 당해 노조는 “책임

성, 투명성, 이해관계자(완성차 조립회사 경영진)이익침해 금지, 법치” 등의 사회책임 원칙을 외면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노사관행, 공정거래 관행, 소비자이익, 지역사회관여 및 개발” 등의 ‘사회책임의 핵심주제와 이슈’에 손상을 주게 된다.

<표-1> ‘사회책임 원칙’과 ‘사회책임의 핵심 주제 및 이슈’

	사회책임 7대 원칙 (7 principles of SR)	사회책임의 핵심주제 및 이슈 (core subject and issues of SR)
1	책임성 (accountability)	조직의 지배구조 (organizational governance)
2	투명성 (Transparency)	인권 (human rights)
3	윤리적 행동 (ethical behavior)	노사관행 (labor practices)
4	이해관계자 이익침해 금지 (stakeholder Interest)	환경 (environment)
5	법치 (the rule of law)	공정거래관행 (fair operating practices)
6	국제규범 준수 (international norms)	소비자이익 (consumer issues)
7	인권존중 (human rights)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

자료 : ISO, DIS on SR 2010. 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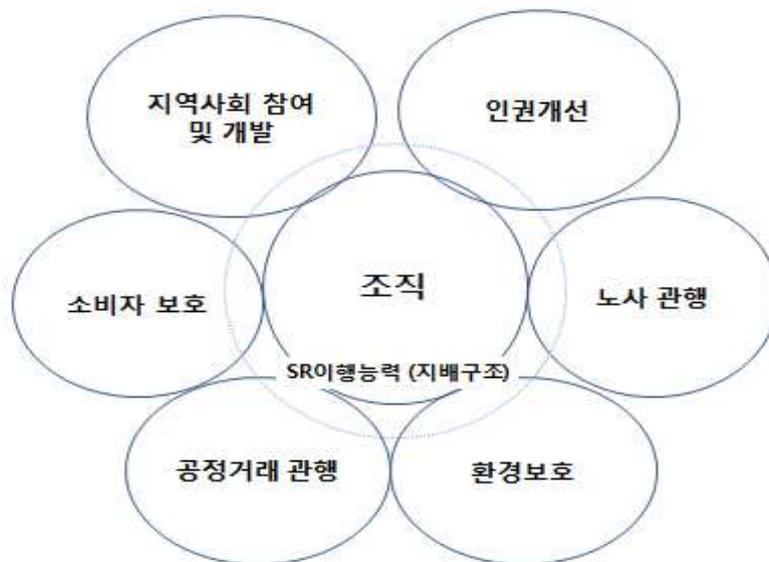
3) ‘사회책임’ 맥락에서의 지배구조

사회책임 핵심주제 및 이슈와 관련한 가장 큰 오해는 ‘조직의 지배 구조’가 갖는 의미이다. ‘사회책임 맥락’에서의 지배구조(organizational governance)는 기업의 지배구조와는 다르다. ‘기업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규율하는 내부통제 장치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경영진의 ‘잔여통제권’(Grossman & Hart, 1986) 즉 재량권의 위임구조를 의미한다.⁶⁾ 그러나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책임' 맥락 속에서의 '지배구조'는 '중심 원' 밖에 '독립된'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여러 영역에 걸쳐 '동심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특정조직의 지배구조를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⁷⁾ 다시 말해 특정 조직(예컨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사회책임 원칙에 의한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림-1>에서 보듯이 '조직의 지배구조'는 '조직'이라는 '중심 원'을 둘러싼 6개의 원을 모두 포괄하는 것(점선으로 표시된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책임 맥락에서의 지배구조는 사회책임의 핵심주제와 이슈를 충족시키는 조직의 'SR 이행능력'을 의미한다. Williamson(2002)의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을 원용하면, 다양한 사회책임 주체 간에 '사회책임 행동의 자발적 교환'을 통해 상호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책임 행동을 규율하는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1> '사회책임' 맥락에서의 지배구조



자료 : ISO, DIS on SR 2010. 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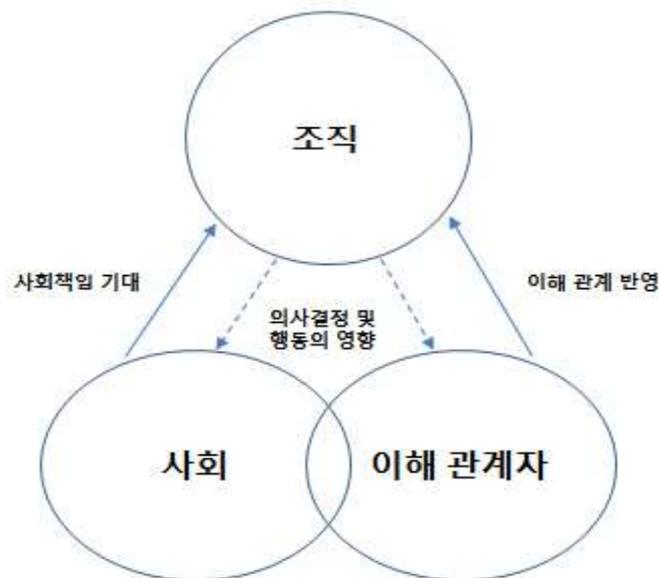
6) 지배구조(경영자의 주식지분)와 경영성과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Shleifer & Vishney(1986), Morck, Shleifer & Vishney(1988)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7)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가 힘을 합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재벌의 지배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식의 논의는 오류이다.

4) 조직, 이해관계자 그리고 사회의 관계

사회책임은 “조직과 이해관계자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된다. 사회책임을 이행하려면 조직의 의사결정과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 즉 이해관계자를 정확히 식별하고(Identifying stakeholders) 이해관계를 정확히 설정(engaging stakeholders)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책임의 기본원칙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상호 존중하는 사회책임 행동을 통해 지속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림-2>는 “조직, 이해관계자 그리고 사회”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조직과 사회’의 관계에서, 조직은 자신의 의사결정과 행동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사회책임은 그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직의 사회책임 행동은 조직에 대한 ‘사회적 기대’(Society's expectation on SR)를 형성한다. 사회적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킬 때, 조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제고된다.

<그림-2> 조직, 이해관계자 그리고 사회의 관계



자료: ISO, DIS on SR 2010. 2. 14

4. 자유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책임

1) 하이에크의 '행동준칙'과 ISO SR에서의 '사회책임 원칙'

'사회책임(SR)의 체계'를 '시장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는 서로 대응되는 개념을 찾아내야 한다. 사회책임 체계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조직'(organization)과 조직의 '의사결정 및 행동선택'은 경제시스템에서 '경제주체'와 '경제행위'를 의미한다. SR의 '사회책임의 원칙'은 경제주체가 경제행위를 선택함에 있어 준거하는 '행동준칙'(rules of conduct)에 해당한다. "사회책임의 핵심주제(core subject)와 이슈"는 사회책임 행동의 성과를 표시하는 영역이면서 실현된 핵심가치를 표시한다. 사회책임 체계에서는 다양한 사회 조직 간에 '사회책임 행동의 자발적 교환'이 이루어질 때, 지속발전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으로 본다. 하이에크의 세계에서는 '행동준칙'을 충실히 따를 때 '자생적 질서'가 형성되며, 상이한 목적을 가진 경제주체의 이익추구가 양립됨으로써 '경제번영'이 이루어진다.⁸⁾

사회책임 체계에서 적시된 '사회책임의 원칙'(principles of SR)은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 이익침해 금지, 법치, 국제규범 준수, 인권존중"이다. 이들 사회책임 원칙은 하이에크의 '행동준칙'과 닿아 있다. 예컨대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 이익침해 금지, 법치"는 "내 것을 지키되 남의 것을 존중하며,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정직하게 배상하고,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 등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해관계자 이익침해 금지' 원칙이 '이타적 행동'에 대한 권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 원칙은 '재산권'에 대한 인정이다. 상대방의 희생 위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해관계자 이익침해 금지원칙'이 지켜진 것으로 볼 수 없다.

8) 하이에크의 이론 체계는 방대하다. 하이에크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와 경제질서"(1948), "법, 입법 그리고 자유"(1982), "발견적 절차로서의 경쟁"(1984), "사회내의 지식의 활용"(1984), "완전 지식의 가장(假裝)"(1989)을 숙독할 필요가 있다.

2) '이해관계자 이익침해 금지'와 신뢰형성

현실 세계는 완전정보의 세계가 아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정직한지 여부를 사전적(事前的)으로 알 수 없다. 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사후적(事後的)'으로 확실히 받을 수 있다면 상대방을 믿게 된다. 따라서 신뢰는 인격행위가 아니다. 행동이 수반하는 결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통제장치'가 작동하면 신뢰가 형성된다. 하이에크는 '행동준칙'을 그러한 통제장치로 인식했다.⁹⁾ 신뢰는 분명 문화지만, 신뢰는 처벌과 통제에서 만들어진다. 신뢰가 쌓이면 선순환을 형성한다. 익명의 타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쌓일 때 행동준칙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되며 그 외연이 넓어진다.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사회책임의 관점에서 지속성장과 지속발전을 꾀하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넘어야 한다"(beyond the CSR). 즉 "기업, 소비자, 노조, 정부, 시민단체" 등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간의 책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책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공동선의 실현"과도 궤를 같이 한다.

사회책임의 맥락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는 서로 이해관계자로, 상호간에 '다면적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1 대 다중(多衆)의 이해관계자' 식의 이분법적 시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단지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여론의 힘을 빌려 특정 주체의 사회적 책임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경감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CSR은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구도'를 전제로 구도가 짜여져 왔다. "기업과 기업 이외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사회적 책임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의 '공동의 의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회적 책임 논의는

9) 행동준칙이 통제장치로서 기능하기는 부족할 수도 있다. 명시적인 통제장치로 '자기책임원리'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하이에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공정한 행동준칙을 법제화, 공식화할 때, 자생적 질서의 창출에 기여하는 '자유법'(law of liberty)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각 주체들의 역할기대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의 문제의 틀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ISO 26000의 가장 큰 기여는 진영논리에 갇힌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을 보다 중립적 영역으로 이동시킨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동안 좌파의 진영논리 중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 이는 좌파 특유의 기업관에 기초한다. 기업을 '계약의 복합체'(nexus of contract)로서의 '재산권'으로 보지 않고,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는 '사회적 기구'(social entity)로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기업은 공기업이 아니다. 기업의 사회적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업이 '사회적 기구'일 수는 없다.

그동안 기업이 사회공헌과 윤리경영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요구를 피해 왔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하지만 ISO 26000에서 말하는 지배구조 개선에서의 '지배구조'는 특정 조직(기업)의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경영참여'로 오해되지 말아야 한다. '사회책임 맥락'에서의 지배구조(organizational governance)는 다양한 사회책임 주체 간에 '사회책임 행동의 자발적 교환'을 통해 상호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책임 행동을 규율하는 장치(governance)인 것이다. 지배구조 개선요구를 잘못 해석하면 기업의 '사적자치 및 경영권'에 대한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Roberts, 2010)

사회책임을 "지속발전을 위한 각 주체의 역할과 기여"로 접근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혁신을 통한 국민경제에의 기여'로 압축될 수 있다. 사회적 맥락에서 '기업시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도 혁신 못지않게 중요하다. 윤리경영과 사회공헌도 투자자,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을 윤리와 도덕에 결부시키기 보다는 '지속경영'으로 통합하는 것이 보다 더 친시장적인 접근방법일 수 있다.

ISO 26000은 행태규제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다. 원래 국제표준은 정량화가 가능한 제품제조 공정 및 제품규격에 대해 표준을 정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다. ISO 사회책임표준은 일종의 행태규제이지만 '경영표준시스템'(management system standard)은 아니다. 그리고 인증 또는 규제 목적(certification purpose or regulatory use)으로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3자에 의한 인증'(third party certification)을 요구하지 않는다.

ISO 26000은 'WTO 기준'에 따른 '공식 세계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등 법적 분쟁을 촉발시키는 근거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ISO 26000은 사회책임 표준이 기존의 협약 내지 표준과 경쟁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있다.¹⁰⁾ 그럼에도 사회책임표준은 개방과 합의에 기초한 '자발적 준수'(voluntary action)로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사실상의(de facto) '시장 표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참고문헌

- Allen, W. "Our Schizophrenic Concept of the Business Corporation," *Corporate Governance*, by Monks & Minnow, Blackwell, 1995.
- ISO,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 26000, Voting begins on:2009-09-14Voting terminates on:2010-02-14, 2009, http://www.iso.org/iso/support/faqs/faqs_general_information_on_iso.htm.
- Carrol, B. A. "A Three-Dimensional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 1979.
- Grossman, S. & O. Hart, "The Costs and Benefits of Ownership: A Theory of Lateral and Vertical Integration,"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 1986.
- Morck, R. A. Shleifer & R. Vishney, "Management Ownership and Market Valuation: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988.
- Roberts, J. "How CSR (ISO26000) Mandates Undermine Free Markets", *Backgrounders*, No. 2409, The Heritage Foundation, 2010. 5.
- Shleifer, A. & R. Vishney, "Large Shareholders and Corporate Control," *Journal of Political Economics*, Vol. 94. 1986.
- Williamson, O. E. "the Theory of the Firm as Governance Structure: From Choice to Contrac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Summer, Vol. 16. No. 3, 20

10) ISO 26000은 국제노동기구(ILO), 유엔 지구협약기구(GCO; Global Compact Office), 경제협력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ISO 26000은 기존의 환경, 인권, 노동, 기업의 공정성 등의 협약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ISO는 각국의 상이한 SR 표준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개발되었다.

<주제토론1>

기업의 사회적책임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토론문

김정호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는 법적 책임, 계약적 책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여 왔다. 법적 책임이란 기업에 투자한 주주, 채권자, 노동자, 소비자, 협력업체 등에 대해서 져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그 외에도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낼 책임,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할 책임, 담합 등을 하지 말아야 할 책임 등이 기업에게 부과되어 있다. 사회적 책임이란 이것들 이외의 책임을 말한다.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학에 대한 기부 같은 것들이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구성요소들이다.

2.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

한국인들은 초창기부터 기업을 사회적 공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병철은 독립운동과 사업을 놓고 고민하다가 사업 쪽이 민족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정미소를 시작한다. 정중영이 스스로를 부유한 노동자라고 불렀던 것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뜻을 강하게 품고 있었다. 김우중은 국내의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공장에서 만든 의류들을 국내에 팔지 않고 전량 해외로 수출했다. 최중현도 한편으로는 SK 그룹을 키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했다. 장학퀴즈, 고등교육재단, 스스로 자신의 몸을 화장시키라고 해서 화장문화의 확산을 이끈 것은 그런 행동의 일부분이다.

미국인들이 자선을 많이 했지만 그것은 개인의 영역이었다. 기업이 소위 사회적 책임을 하게 된 것은 2차 대전 이후부터라고 봐야 한다. 그 이전까지 기업이 설립 목적 이외의 용도로 돈을 쓰는 것은 월권금

지의 원칙(Ultra Vires Doctrine)을 위배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가 기업 활동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한국은 초기부터 개인의 자선과 기업의 자선 사이의 구분이 모호했다. 즉 기업 차원에서의 자선이 많았다는 말이다. 기업들은 돈을 벌면 주로 학교를 지었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왔다. 그런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삼성그룹 드림클래스: 저소득층 아이들의 성적 향상. 진로지도.

현대자동차그룹. 기프트카 캠페인.

LG그룹 청소년교육. Green 2020

SK그룹. 사회적 기업 육성 고등교육재단

금호아시아나그룹: 문화예술지원

롯데그룹. mom편한 프로젝트

3. 사회적 책임의 실천은 바람직한가: 기회비용 인식의 필요성

기업의 이런 착한 행위들이 바람직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필자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회비용 때문이다. 기업이 저소득층과 예술과 대학을 지원하는 돈만큼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한다. 포기하는 다른 것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크다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르는 기회비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재투자 : 기업의 이윤을 재투자해서 생산규모를 늘리고 신제품을 만들 수 있다.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일 수 있다.

배당, 급여 등 : 사회적 책임에 지출할 돈으로 기업관계자들의 몫을 늘릴 수 있다. 주주에게 배당을 늘리거나 직원의 급여를 늘릴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이와 같은 기회비용이 따른다. 그럴만한 일인지 아닌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회비용을 따져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4.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이유

이와 같은 기회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의무로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연스러운 행위: 사회적 책임이 대부분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게 된 측면이 있다. 마치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당연한 일로 여겨지듯이.

정치적 보험: 오늘날의 정치는 대중의 여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대중적 이미지가 안 좋은 기업은 정치적 리스크를 안아야 한다. 대중적 이미지가 좋아야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선처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은 대중에게 베푸는 행위를 통해 좋은 이미지를 만든다.

생산성을 높일 목적: 좋은 이미지는 제품의 판매에 도움 될 수 있다. 또 직원들로 하여금 자기 회사에 자부심을 느끼게 해서 생산성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5. 왜 계속 사회적 책임 이야기가 나오는가?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알만한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에 상당한 투자를 한다. 그런데도 계속 사회적 책임이 이슈가 되는 것은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일 거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기업들이 이미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또는 알고 싶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더 낼 능력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어느 정도를 써야 적당한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아마도 능력 있는 기업은 능력대로 내라는 것이 대중이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의 기준일 것 같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아니고 대기업에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6. 대중은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사람들이 서로에게 착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듯이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본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타인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 정도다. 기업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와 노동자와 주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 세금을 잘 내라는 것 정도이다.

그런데도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요구할수록 더 많은 것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에 대한 요구가 클수록 더 많은 것을 내놓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또 기업의 이윤이 사회 덕분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 환원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쓰이는 것은 그런 인식의 결과인 듯하다. 사회가 있어야 기업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기업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사회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각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사회가 형성되며, 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은 없다. 모든 거래는 거래 쌍방에게 이익을 준다. 기업이 돈을 번 것은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덕을 본 결과이지만 또 그 과정에서 해당 사회구성원들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해주었음도 사실이다. 그리고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것이면 학자도, 노동자도, 시민단체도, 저소득층 등 모든 사회구성원들

이 사회적 책임을 해야 한다.

7. 기업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자선행위로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제 기업 활동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 되었다. 이것을 법제화한다면 기업의 수익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자발적 실천에 맡기는 것이 좋다.

기업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것은 스스로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제품의 품질과 가격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생기며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간다. 그것을 못해서 망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망하는 기업만큼 사회에 몹쓸 짓을 하는 것이 없다.

격변의 이 시대에 또 한 가지 강조되어야 할 사회적 책임은 부도가 나면 깨끗이 사라지라는 것이다. 정부 돈으로 연명하며 좀비기업이 되는 것은 사회에 매우 해로운 행위이다. 사라질 기업은 신속히 사라져야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하고 번영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주변에 베푸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생존 그 자체가 있는 후의 일이다.

<주제토론2>

노조의 사회적 책임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노동조합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

김대호 | 사회디자인연구소장

노조의 사회적 책임 논의의 배경

권리, 이익, 혜택의 사유화/독점화와 책임, 부담, 의무의 사회화/공유화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가치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노동조합은 조직형태(기업별 노조 내지 무늬만 산별노조)와 추구하는 가치(정규직/내부자 조합원의 권리, 이익의 신장)상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기 십상이다. 노동조합의 구조와 역사, 문화가 노조운동의 본령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조 운동의 본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모순과 노동력 상품의 특수성을 전제로, 단위 기업이나 공장을 뛰어넘어 국가, 산업, 지역, 직업 차원의 직무에 따른 근로조건의 표준을 형성하여, 근로계약의 공정성, 연대성, 안정성(갈등 완화)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조건이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의 교섭력에 비례하는 기업별 노조 하에서는 본령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2010년 11월 1일에 공표된 ISO 26000을 전후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이유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10년대 들어 공공부문 및 규제산업과 더불어 한국 노동조합의 양대 기둥인 자동차(부품), 조선, 전자, 철강 등 주력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의 후폭풍과 일취월장한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인해 생존전략에 골몰하면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관련 논의는 일종의 사치처럼 되어 버렸다. 하지만 결론만 먼저 말하면, 노동조합의 본령과 사회적 책임 및 조건에 대한 성찰 없이는 이 미증유의 위기를 타개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제4차 산업 혁명이라는 거대한 위기이자 기회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다.

ISO26000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ISO(International Standardizing Organization)는 명칭 그대로 국제표준화기구다. 기계공학분야의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1926년에 설립된 ISA(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National Standardizing Associations)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현재의 ISO는 나라마다 다른 공업규격을 조정·통일하고, 물자와 서비스의 원활한 국제적 교류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46년에 창립되었다.

ISO 26000은 기존의 국제규범들과는 달리 기업뿐만 아니라 조직형태나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조직에게 적용되는 사회적 책임(SR)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개발되었다. 이는 기업 등 경제주체에 대해 이행을 강제하는 경영시스템표준(Management System Standard, MSS)이 아니라, 권고적 성격을 지닌 지침표준(Guidance Standard)으로 개발되었다.

ISO 26000의 제정을 계기로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차원에 머물러 왔던 사회적 책임 논의가 정부의 사회적 책임(Government Social Responsibility, GSR), NGO의 사회적 책임(NGO Social Responsibility, NSR), 병원의 사회적 책임(Hospital Social Responsibility, HSR), 대학의 사회적 책임(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USR),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nion Social Responsibility, USR)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규정한 것이다.

ISO 26000이 정의한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통하여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의 결정과 활동에 대한 책임”이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transparent and ethical behaviour)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사회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행동'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고려하는 행동' '적용 가능한 법에 합치되고 국제적인 행동규범과 일치하는 행동' '조직전반에 걸쳐 통합되며, 영향력 범위 내의 관계들에서 실행되는 행동'

사회적 책임의 원칙(Principles of social responsibility)은 ①책임성 ②투명성 ③윤리적 행동 ④이해관계자의 이해 존중 ⑤법률 존중 ⑥국제행동규범 존중 ⑦인권 존중으로 정식화 하였다.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핵심 주제(core subjects)는 다음과 같다. ①조직지배구조(Organizational governance) ②**인권(Human rights)** ③**노동관행(Labour practices)** ④환경(The environment) ⑤공정운영관행(Fair operating practices) ⑥소비자 쟁점(Consumer issues) ⑦지역사회 참여와 개발(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

노동(조합)과 관련된 분야는 ②**인권(Human rights)** ③**노동관행(Labour practices)**이다. ②인권(Human rights)의 상세 주제는 '차별과 취약계층(Discrimination and vulnerable groups),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Civil and political rights),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노동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가 있다. 4대 핵심 노동기본권으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인정(Freedom of association and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강제노동 철폐(Elimination of forced labour), 아동노동 폐지(Abolition of child labour), 동등한 기회와 차별금지(Equal opportunities and non-discrimination)**'를 규정하였다. ③ 노동관행(Labour practices)에는 '고용과 고용관계(Employment and employment relationships),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Conditions of work and social protection),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 직장에서의 보건과 안전(Health and safety at work), 인간 개발과 직장 내 훈련(Human development and training in the workplace)'이 명시되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노사관계나 근로조건 관련 표준(규범)을 비껴갈 수 없기 때문에, 1919년에 창립된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그것과 중첩 되거나 충돌 된다. 단적으로 국제노동기구 헌장 전문은 “1일 및 1주당 최장 근로시간의 설정을 포함한 근로시간의 규정, 노동력의 공급 조절, 실업의 예방, 적정 생활급의 지급, 직업상 발생하는 질병·질환 및 상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 **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 고령 및 상해에 대한 급부, 자기 나라 외의 다른 나라에서 고용된 근로자의 권익 보호, **동등한 가치의 근로에 대한 동일보수원칙의 인정, 결사의 자유원칙의 인정**, 직업교육 및 기술교육의 실시 등을 통해 정의 및 인도주의와 세계의 항구적 평화를 확보” 등을 밝히고 있다. ILO는 이의 실현을 위해 각국의 노동입법 수준을 향상시켜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개선토록 권고하며. 사회정책과 행정, 인력자원 훈련 및 활용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거나 협동조직과 농촌공장 설립을 촉진하는 일도 수행한다.(네이버 지식백과 국제노동기구)

ISO26000의 ②인권(Human rights) 분야에서 ‘4대 핵심 노동기본권’이 들어간 것은 ILO 등 노동조합과 ISO의 협의의 결과이다.

ILO 등 노동계는 “ISO 26000이 UN, ILO, OECD 등 국가 간 국제기구가 제정한 기존의 국제기준이나 법률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수준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문화나 지역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 요소를 최소화하여 보편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는 별이의 없이 수용되었다 (정승국·강충호·한동균,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 논의의 현황 및 발전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10) 요컨대 ISO26000이 주창하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UN, ILO, OECD 등 국제기구가 주창한 정신, 방법, 기준에서 약간의 연장 내지 보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대부분은 한국의 헌법과 노동관계법으로 수용되어 있다. 하지만 “동등한 가치의 근로에 대한 동일 보수 원칙”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연공임금체계(호봉제)가 보편화되어 있고, 또 임금 등 근로조건이 기업의 지불능력과 교섭력의 함수가 된 한국에서 전혀 수용될 수가 없다.

노동조합과 기업의 의심과 경계

ISO26000은 기본적으로 경제주체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늘려잡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대립하는 경제 주체들은 이를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기 십상이다. 한국 노조운동의 이론적, 정책적 향도 역할을 하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영두 연구위원은 “외국 노동조합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용 사례”(2013.5.29)에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나 기업에 더 많은 책무를 지우는 무기로 삼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노조가 CSR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책무 강조, 기업 자발주의(voluntarism)의 회피 등이 원칙으로 견지될 필요가 있다. 이는 노조운동이 CSR을 추진하는 주요 수단은 '책무적 성격'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는 법률과 제도, 단체협약임이어야 함을 의미한다.(중략) 둘째, 한국의 환경에서는 법률의 준수, 기업 투명성과 정보공개, 지역의 고용문제 및 취약층 보호 등에 대한 기여, 공급망 노동권, 고용차별 등의 사항들이 노동조합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요한 CSR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지역 노동문제에 대한 기여, 공급망 노동권, 고용차별 해소 등의 과제는 현재의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및 노조의 조직화 과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측면 때문에 권혁철(전경련 부설 자유경제연구원)은 '노조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조합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이것이 노조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하였다. 만일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명분으로 노조가 기업의 경영과 활동에 간섭하고 발목을 잡는다면 이제까지의 정치투쟁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외투를 쓴 것이나 다를 바 없게 될 수 있다”면서 “기업이건 노조건 자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정승국 · 강충호 · 한동균, 2010, P21~22쪽)

한국노동조합의 USR 실천 사례

ISO26000은 경제 주체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 없이는 사문화 될 수 밖에 없다. 경제 주체간 관계가 대립적이면, 확대된 책임 조항을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로 삼을 것이기에, 공격을 당하는 측에서는 '선언'이거나 '권고적 성격의 지침'에 불과한 ISO26000을 외면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교적 노사(노경)화합이 잘 이뤄지는 몇몇 기업에서 USR실천이 이뤄지고 있다. 한동균은 LG전자 노조 등 한국노총 소속 대기업노조 4곳의 USR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조사한 결과를 표로 만들었다.

<표1> 국내 사례조사 노동조합의 USR에 대한 인식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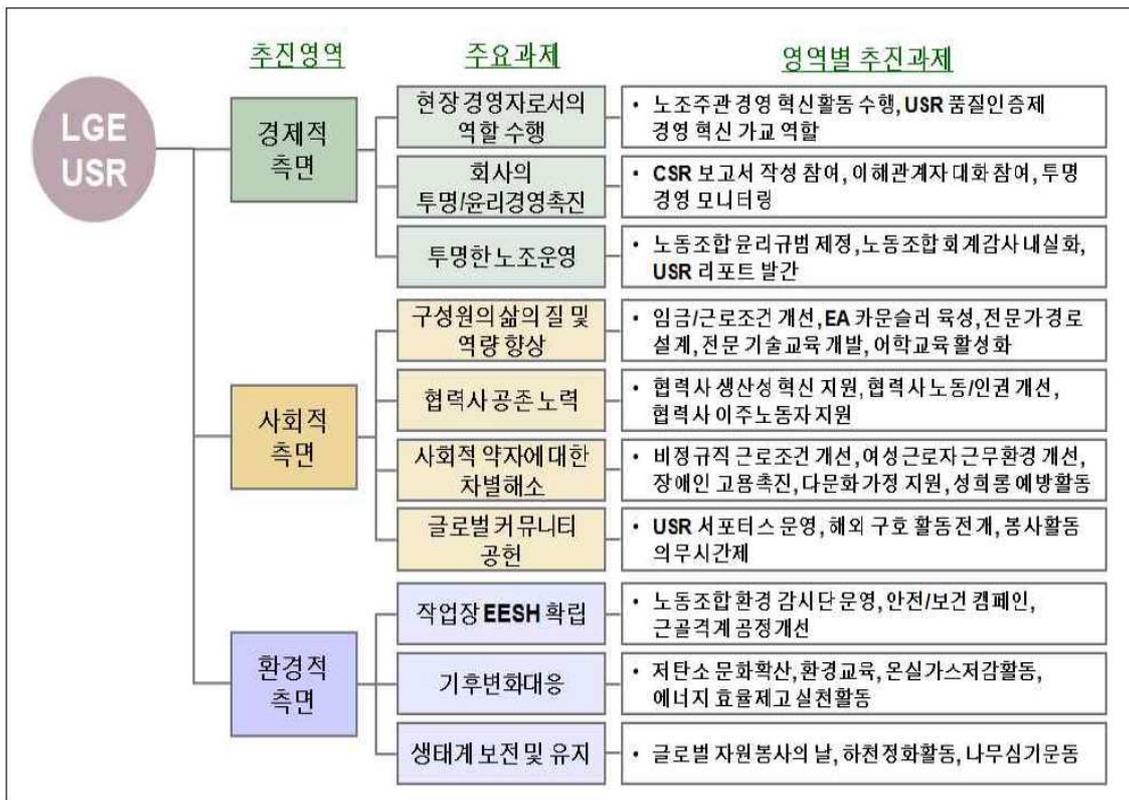
	LG전자노조	금융노조 국민은행지부	연세의료원 노조	한국수자원공사 노조
USR에 대한 전반적 태도	적극적. 노동운동의 새 패러다임으로 공론화하고 확산시켜야 한다는 입장	긍정적. 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	신중하지만 긍정적. 대체로 동의하지만 구체적 실천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입장	긍정적. 과정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
해당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입장 및 태도	적극적. 노조가 기업의 CSR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실정임	적극적 활용론. 기업의 CSR 활동에 가입하여 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적극적 활용론. 기업의 CSR 활동에 협력할 것이 있다면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	긍정적. 공기업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받는 유일한 길은 CSR이라는 입장
노조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시기의 적절성	적절함. 이러한 환경변화에 노조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	시기상조. 최소한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	시기상조. 그 방향은 옳으나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조합원의 인식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	적절함. 노동운동이 정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
해당노조에서 USR의 발전 가능성	현재 USR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중에 있음.	가능성은 충분하나 기존 노조의 사회개혁 활동의 연속선상에서 발전되어야 한다는 입장	조합원의 내부동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 다만, USR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으로도 의미있다는 입장	사회공헌 활동을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USR로 발전할 것이라는 다소 모호한 입장
새로운 노동운동 전략으로서 USR의 가능성	미래지향적 노동운동전략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적극적 입장	현장에서 생소한 USR 개념이 노동운동전략으로 자리잡기는 아직은 어렵다는 입장	국민들에게 노동운동의 새로운 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충분함.	노동조합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입장

자료: 정승국 · 강충호 · 한동균, 2010, p99

한동균에 따르면 이 노조들은 “노조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지적과 요구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으며, 노조의 이미지를 쇠신하기 위해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기부금 모금 등의 사회공헌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맞물려 노조의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고 활동폭을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대다수의 노동조합은 “USR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LG전자 노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조합원들로부터 과연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참고로 한국에서 USR 실천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LG전자 노조의 USR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1] LG전자 노조 USR의 영역별 추진체계



자료: 정승국 · 강충호 · 한동균, 2010, p75

한국 대기업 노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과 “협력사 생산성 혁신 지원, 협력사 노동/인권 개선, 협력사 이주노동자 지원” 이 명시 되어있으나 한국의 노동관계법이나 원하청 관계상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인가? 노동조합의 후진적 적폐인가?

한국의 생산물시장 구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시장 현실을 직시하면, 한국 노동조합의 핵심 화두는 ISO26000이 주창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선진적 가치 구현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내지 직장계급 사회-지대추구사회라는 후진적 적폐 일소가 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이는 노동조합만의 책임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사람 값(근로조건)은 직무성과=생산성이 아니라 소속(직장)에 따라 천양지차가 난다. 노조운동의 본령인 산업 차원의 근로조건의 표준이 사실상 없을 뿐만 아니라, 추구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팔자'가 피고, 못 들어가면 '팔자'가 비루해진다. 좋은 직장은 근로자의 창의와 열정을 최대한 끌어올려 높은 생산성을 구현하는 훌륭한 조직문화와 경영능력이 있는 곳도 없지는 않지만, 대종은 공공부문(정부와 공기업), 은행, 방송, 통신 같은 규제산업과 독과점 산업·기업이다. 대체로 초과이익=지대(렌트)가 많이 제공되는 곳이다. 한국의 노조는 주로 이곳에 포진되어 있다. 지대(렌트)는 본질적으로 소비자나 협력업체나 세금(국민)을 약탈한 것이기에, 노조는 한국에 즐비한, 공공성을 파는 거대한 지대추구 집단의 하나이다. 게다가 한국 노조의 철학, 가치, 행태는 전후방 가치생산사슬에 종사하는 다수 근로자를 조직하지도 보호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그 반대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2015.11.18)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1,905천명으로 조직률은 10.3%(조직대상 18,429천명)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경향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 9.8%까지 하락하였으나, 2011년 복수노조 허용 등으로 상승하여 2012년 이후 조직률이 10.3%를 유지하고 있다. OECD국가 중에서 조직률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부문별 조직률을 보면 민간부문 조직률은 9.3%(1,640천명), 공무원부문 조직률은 64.1%(205천명), 교원부문 조직률은 14.5%(60천명)이다. 교원부문 조합원수는 2009년 82천명에서 경향적으로 감소하여 60천명까지 내려왔다. 그런데 민간부문이라 하더라도 무한 경쟁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 노동조합은 거의 없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1989년 이후 근 30년이 흐르면서 회사가 폐업이나 해외 이전 등으로 없어지거나, 노조가 없어지거나 하여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살아남은 노조는 대부분 현대기아차 같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철도, 지하철, 전력, 가스,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이나, 은행, 증권, 방송, 통신, 병원 같은 규제산업 등에 뿌리를 박고 있다. 예외 없이 소비자나 협력업체에 대해 갑질을 통해 초과이윤(렌트)을 확보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한국의 노동조합이 사회적 약자의 무기가 아니라, 강자의 무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중의 하나는 사업체 규모별 노조 조직률이다. 임금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체의 노조조직률은 1.0%, 30~99명은 2.0%, 100~299명은 8.6%, 300명 이상은 47.7%이다.

<표2> 사업체 규모별 조직현황

구분	30명 미만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임금근로자수(명)	10,884,000	3,581,000	1,754,000	2,195,000
조합원수(명)	105,558	72,259	151,254	1,046,683
조직률(%)	1.0	2.0	8.6	47.7

*임금근로자수 자료 출처 : 경찰 자료 / 2013년 12월말 현재

기업체 규모별 통계는 없으나, 만약 기업체 기준 통계를 내면 조직률의 양극화 현상은 더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30명 미만이나 30~99명 사업체도 은행의 지점 같은 곳(사업체)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독립 중소기업의 경우 조직률이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 노조는 조직 형태는 초기업 일지라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노조(지부나 지회)들의 연대 의식이나 우리(공동체)의식은 기업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한다. 전교조가 예외적인 존재가 된 것은 교원의 임금, 복지, 연금 등의 재원은 사실상 세금(지방교육재정)이라서, 학교(재단) 재정 형편에 따라 교원의 근로조건이 다르지 않고, 이를 정부(교육부)와 교섭을 통해 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교조를 제외한 다른 노조는 기업의 형편(수익성)과 노조의 힘(교섭력)에 따라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이다. 하는 일이 거의 같아도 처우(임금 등)는 천차만별인 것이다.

1987년 이후 거의 30년간 한국 노동조합 운동을 주도해 왔던 민주노총 조직과 그 모태가 되는 산업기업과 시장구조를 보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별로 없다. 전국 교직원노조(조합원 60,249명)와 전국공무원 노조(조합원 6만여 명)는 국가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존재들이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연맹(조합원 123,655명)의 주력은 한국철도(코레일), 도시철도(지하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스공사 등인데, 기본적으로 국가 규제로 독점적 업역을 보장받는 존재들이다. 은행이 주축인 전국금융산업노조, 증권보험사가 주축인 전국사무금융노조(조합원 61,752명), 대형병원이 주축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조합원 43,154명) 등은 국가 규제로 사업자 자격, 행위, 상품, 가격 등을 통제 받는 존재들이다. 조합원 15만명의 전국금속노조의 경우 현대자동차(46,977명), 기아자동차(31,432명) 한국지엠(14,016명) 만도(2,376명) 등 완성차 회사 및 부품사와 조선회사, 철강 회사 등이 주력인데, 국제적으로는 무한 경쟁을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협력업체에 대해 압도적 우위에 슈퍼 갑들이다. 민주노총이 좀 심하긴 하지만 한국노총, 국민노총, 미가맹 노조의 성분도 그리 다르지 않다.

정규직-비정규직, 원청(갑)-하청(을), 생산자-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산업·업종 노동자 및 이해관계자 전체의 지속가능한 공생(균형)발전을 의식하는 노조는 어디에도 없다. 노조의 철학, 가치, 조직형태상 불가능하다. 원청,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 계급, 산업, 업종 차원의 연대 없이도 원하는 것을 거의 따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연대를 하여, 산업, 업종 차원의 직무에 따른 근로조건을 만들면 수익성과 단결투쟁력이 좋은 자신들의 요구를 많이 접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재 한국 노조의 대부분이 뿌리를 내린 부문, 산업, 기업들은 소비자나 협력업체나 국민세금을 털어 지불능력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시장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얼마든지 아래로 전가할 수 있다. 슈퍼갑(공공기관), 갑(대기업), 독과점기업, 규제산업 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노조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은 그 조직률 및 협약적용을 보다 월등히 크고 강하고 치명적이다. 노조는 공무원과 더불어 지독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간주하는 시대착오적 고용노동시스템(표준, 패러다임, 철학, 가치, 관행 등)을 통해 5천만 국민의 고용임금 사정을 훨씬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노조의 힘이 이렇게 커진 것은 일차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노동관계법이 이를 제어하기는커녕 편승하고, 공고화하고, 확산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한국의 노동관계법은 일단 관문만 통과하면, 즉 정규 직원만 되면 대과가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되고, 별거 아닌 일을 해도 임금은 근속연수와 단체교섭을 통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능사로 여겨 왔다. 또한 파업시 공장점거가 가능하고, 일부 산업·업종을 제외하고는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파업에 대한 대응수단이 없다. 그래서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노조가 압도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그 반대이다. 또한 조직된 이익집단이 별로 없는 한국 정치현실에서, 유일하게 조직된 집단으로서, 국회 의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진보 정치세력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힘센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만큼 사방으로부터 견제, 감시, 질타를 받는데, 노조와 공무원은

이들 뒤에 숨어 있다 보니, 이들의 힘에 상응하는 견제, 감시, 질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장 담벼락을 뛰어넘어 폭넓은 연대를 추구하는, 노조운동의 본령에 충실한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로 진화하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서 실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자조와 연대(노동 회의소, 공제조합, 노조 등)를 정부와 정당들이 촉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공정거래와 무기대등의 원칙은 생산물시장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노동시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주제토론3>

법조계의 사회책임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

사회통합과 신뢰회복을 위한 법조계의 사회적 책임

'pro bono' 와 형사사건 수임료 제한 제도의 도입

박인환 |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

1. 법조의 사회적 책임 : 법조의 공공성

가. 전문직(profession) 프로페셔널(professional)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아마추어(amateur) 개념에 대비하여 서구사회의 문화적 전통에서 수립된 개념이다.

원래 서구에서 말하는 'profession'은 神 앞에서의 신앙고백, 신에 따르고 봉사하는 일, 천직, 성직을 말하는 것이었으나, 현대 미국에서는 공공에 대한 봉사(Public Service)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의사, 성직자, 법률가)

이와 함께 'profession'으로서 법조(Legal Profession)는 '고도의 학문적 수련, 타인을 위한 봉사, 성공이 금전의 다과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미국의 Brandeis 대법관)

이러한 전문직 종사자(전문가)의 직업윤리로는 개인적으로 바른 품성과 함께 공적인 도덕성, 윤리의식이 강조되고 있으며,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미국식 개념을 뜻하는 professionalism(전문직업주의)은 commercialism(상업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변호사가 자신의 직업과 기능, 전문 지식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는 일을 의미하고 있다.

나. 변호사의 '공공적 지위'에 관한 변호사법 규정(제2조)

변호사법은 제1조(변호사의 사명) 제1항에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법 제2조에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Legal Professional)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변호사는 일반의 商人과는 구별되는 직업임을 선언하고 있다.(변호사는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

이에 따라 변호사는 다른 직무의 겸직이 제한되어, 변호사는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직접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조차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변호사법 제38조)

다. Professional Responsibility(전문직으로서 법조의 윤리, 책임론)

미국의 경우에도 오랜 기간 로스쿨의 윤리교육은 커리큘럼에서 ‘찬밥’신세를 면하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그들이 어렸을 때 윤리적 가치관이 정립되며, 나이가 들어 로스쿨(전문대학원 과정)에 입학해서는 의뢰인과 사이에서 ‘이해의 충돌’이나 변호사의 ‘비밀유지 문제’ 등 법률적인 것만을 배운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스캔들 당시 많은 변호사들의 악행이 공개되면서 로스쿨의 인가를 맡고 있는 미국변호사협회(ABA)로 하여금 윤리교육을 필수로 요구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변화가 시작되었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에 대한 불신의 역사는, 1980년대 이후 ‘블랙 먼데이’ 금융스캔들에서 변호사들의 의심스러운 역할, 클린턴 대통령의 ‘화이트워터’ 부동산회사 스캔들, O. J. Simpson 재판 등을 거치면서 법조에 대한 불신이 크게 증가하였다.(당시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 약 42%는 법조인의 윤리기준을 매우 낮음에서 낮음 정도로 평가)

- * '훌륭한 변호사는 나쁜 이웃이다',
'배고픈 사자보다 변호사가 더 무섭다'
'Devil's Advocate(악마의 변호사)'

당시 법조불신으로 인한 사회분열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던 미국 듀크대 로스쿨 학장은 학생들에게 "We believe in ethics in, ethics out."를 천명하였으며, 미국 연방판사의 경고로 다음과 같은 유명한 구절이 있다.

"로스쿨생 여러분들이 언젠가 정직하지 못한 일을 부탁받을 때, 비록 여러분들이 家長으로서 여러 아이의 아버지이고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때 여러분이 해야 할 대답은 only 'No' 뿐이다."

라. 우리나라의 경우(법조불신의 현황)

법조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대하여는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2015년 10월 20일 한국입법정책연구원에서는 대한변협 등과 공동 주최한 입법정책포럼에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여론조사를 발표한 일이 있었다.(한백리서치연구소의 여론조사 분석결과)

위 조사결과에 의하면,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1.8%에 불과해 68.2%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인 중에서는 판사(31.9%)가 변호사(13.8%)보다 신뢰도가 훨씬 높았고 **검사(13.5%)는 변호사보다 낮았다.**

어린 시절부터 다른 직종에 비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우수 인재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소위 '사회지도층' 엘리트 집단으로 자부해 온 법조인 집단이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아 심각한 위기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즉 법조에 대한 극단의 신뢰 위기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법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2. 법조의 사회적 책임과 ‘pro bono(공짜로)’ 활동

가. pro bono(무료)는 주로 미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변호사들이 보수를 받지 않고 변론이나 자문을 해주는 활동을 말한다. 이는 공익의 차원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라틴어 ‘pro bono publico(공익을 위하여)’에서 기원된 것이다.[미국의 경우 주로 형사사건 무료 법률 서비스]

미국변호사협회(ABA) 윤리규정에 의하면, 미국은 변호사들에게 일년에 최소 50시간의 프로 보노 활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로스쿨 체제 하에서는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법시험 체제 하의 사법연수원에서는 1학년 여름 방학 기간에 연수생들이 법률봉사 활동을 하게 되는데 주로 공공 단체나 사회단체에서 2-4주 정도 무료 법률상담활동을 하고 있다.(구청이나 법률구조공단, 노동단체, 소비자단체 등에서 방문자,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등)

나. 우리나라 변호사의 ‘pro bono’에 관한 변호사법 규정

변호사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공익활동에 관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대한변협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위임되어 있다.

다. 대한변협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1)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내용(제2조)

- 0 시민의 권리나 자유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경제적인 약자를 돕기 위하여 마련된 자선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 및 교육기관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무료 또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과 위 공익적 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자로서의 활동 중 대한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 0 대한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활동
- 0 대한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법률상담변호사로서의 활동
- 0 대한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에서의 활동
- 0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대리인으로서의 활동
- 0 법령 등에 의해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한 활동 (다만, 상당한 보수를 받는 경우를 제외)
- 0 개인에 대한 무료변호 등 법률서비스 제공 행위 또는 입법 연구 등 법률지원활동 가운데 공익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대한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 0 대한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

2) 공익활동의 실행 방법(제3조)

변호사인 개인회원은 위의 방법을 선택하여, 연간 합계 3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실행하여야 하고(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방변호사회는 위 30시간을 20시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익활동 시간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1시간 당 금 20,000원 내지 3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공익활동의무 대체 방법(제4조)

법무법인 등이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 전원을 위하여 행한 공익활동 시간은,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인 개인회원 전원이 공동

으로 행한 것으로 보아 이를 그 전원의 수로 균등 배분하여 각 개인회원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0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인 개인회원 전원을 위해 행한 공익활동
- 0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하여 그 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

3. 법조의 사회적 책임과 형사사건 수임료 제한

가. 법조계의 고질인 '전관예우'

얼마 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소위 '전관 변호사'인 홍만표 변호사(대검 검사장 출신)와 최유정 변호사(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가 탈세와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그 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전관 변호사들의 거액 수임료 실태와 법원·검찰의 사건로비를 통한 전관예우의 실상 일부가 드러나게 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 말고도 2011년 개업 후 소위 '돈이 되는 형사사건'은 거의 싹쓸이 하면서 당국에 신고된 수임료로만 해도 1년에 거의 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벌어들이고 그 수입으로 부동산회사를 차려서 가족들의 명의로 무려 100채 이상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으며, 앞서 최 변호사는 정 대표 등 2명으로부터 각 50억원씩, 모두 1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우리 국민들은 그 동안 소문으로 무성하던 '전관예우' 실상의 일면을 목도하고 경악한 바 있다.(홍 변호사는 2013년 한 해 동안 당국에 신고한 수임료만도 91억 2000여만 원에 이른다.)

사실 법조계의 한탕주의 문화로, 법조비리의 뿌리가 되는 전관예우의 폐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고질화된 지 오래다.

최근까지 언론보도 등으로 나타난 것만 해도, 고위직 법조인 출신으로 현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청문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겨우 임명되었던 정홍원 전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현 황교안 국무총리도 그 직전 법무장관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그가 부산고검장 퇴임 후 법무법인에 근무하면서 약 17개월간 올린 16억원의 소득에 대하여 '전관예우' 의혹이 있었다.(또한 현 정부에서 검찰조직의 총수인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던 김진태 변호사조차도 그가 대검 차장 퇴직 후 수개월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하여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다.)

그 전에는 2014년 5월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나가 보지도 못한 채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 그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5개월간 16억원의 막대한 수입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당시 고위층 관료사회의 적폐라고 하는 '관피아' 현상에 빚대어 '법피아'라는 웃지 못 할 신조어까지 등장하였다. 당시 안 전 대법관은 "내가 생각해도 수입이 많았다"면서 머리를 숙이고 "공직에서 받았던 과분한 평가가 수입에 도움이 된 측면도 있었다"고 하면서 급기야 11억원의 재산을 사회에 내놓기로 약속하기도 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논평을 내고 "안 후보자가 번 수입료는 일반 변호사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거액"이라며 "이는 전관예우의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사법질서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현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도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소장을 마치고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약 7개월간 7억 원을 받는 등 불분명한 재산 문제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온갖 망신을 당하고 결국 총리직에 오르지 못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양돈 위탁사업 명목으로 2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2400억 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다단계사기 업체 '도나도나' 사건에서도 거액의 수입료와 함께 우

병우 민정수석 외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현직 인사가 다수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 수석 전임자인 김영한 전 민정수석도 변호사 시절 우 수석과 함께 도나도나 최모 대표의 변호인으로 일했으며, 두 전·현직 민정수석의 공식 수임료만 4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당시 김 전 수석은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 생활을 할 때였다.

도나도나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정암도 선임했는데, 확인된 선임료는 각각 2억 2000만원과 1억원이다. 도나도나가 2011년 10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우 수석에게 1억 1000만원, 홍만표 변호사에게 5억 9300만원을 포함해서 변호인 선임에 쓴 돈은 확인된 금액만 13억 5300만원의 거액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인 백혜련 의원은, 도나도나 대표 최 모씨는 홍만표 변호사가 검사 시절 수사했던 인물이라면서 최 씨의 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홍만표 변호사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현 민정수석,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최고의 전관들이 모였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백 의원에 따르면 유사 수신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수임료가 높은 만큼 피해자와 진정도 많아 변호사 업계에서는 잘 말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의 폭로로 전직 검찰총장 '20억 수임료' 의혹이 논란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일본계 대부회사로부터 받은 거액의 수임료를 폭로하기도 하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에 의하면,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일본계 대부회사인 SBI홀딩스코리아, 그 자회사인 베리타스인베스트먼트 법률 고문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회사의 전 대표가 검찰 내사 과정에서 회사는 입건도 안됐는데 4개의 법률사무소 및 로펌에 사건을 의뢰했으며, 그 수임료가 거의 17억-18억원 가량 된다. 이 중 한 전 검찰총장이 자문료로 2억 2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힌 것이다.(수

많은 피해자들의 돈으로 구성된 변호사 수임료의 출처를 생각하면, 전직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야 말로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염치 불구의 '전관 탐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2007년 대검찰청 차장직에서 퇴직한 후 로펌에서 약 7개월간 7억 7000만원 정도를 받은 일이 전관예우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2011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결국 그는 청문회 석상에서 보지도 못하게 되었다.(당시 경향신문은 '죽은 목숨도 살리는 전관의 힘, 모셔가기 경쟁'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는 '월급에 0 하나를 더 붙여라, 그들만의 화려한 2막', '이런데도 전관예우가 없다고 억지 부릴 건가'라는 제목으로 전관예우가 관행화 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 첫 법무장관인 김경한 장관도 서울고검장 퇴직 후 2002년부터 6년간 로펌에 근무하면서 재산이 48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2008년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었다.

전관예우 의혹은 그 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2005년 당시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0년 대법관 퇴직 후 5년간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식적으로 신고된 수임료만으로도 1년에 10억원 이상 약 60억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 뒤에 대법관으로 지명된 박시환 변호사도 2003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퇴직 후 약 22개월간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식적으로 신고된 수임료만으로도 20억원에 육박하는 큰 돈을 벌어들인 일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운이 좋게 그들은 모두 대법원장과 대법관직에 임명되었고, 아이러니 하게도 그때부터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하에 로스쿨의 도입 등 사법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전관예우가 우리 사회에서 처음 문제가 되던 당시에는 법조계 내부에서는 전관예우란 ‘사라지지 않는 신기루’와 같은 헛된 존재라면서 강하게 부인하거나 아주 예외적인 일부의 일탈행위에 불과한데도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오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전관예우는 일반 국민들 대부분은 이를 체감하면서 “있다”고 말하는데, 지금도 다수의 판사나 검사 등 현직 법조인들은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2013년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서울지역 변호사들 7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 10명 중 9명은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전관예우에 관한 거의 최초의 실증적인 조사로 보인다.)

나. 주로 형사사건에서 문제되는 전관예우

흔히 전관예우를 이야기 할 때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사건 등 모든 사건을 거론하면서 마치 법원에서 취급되는 모든 법률적 사건들이 전관예우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여 논의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 수임료의 제한’ 문제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된 민사사건 등의 경우를 들면서 자유시장 원리, 계약 자유의 원칙 등을 내세워 반대론을 펼치고 있다. 이른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도장값’ 등 민사사건 등에서도 전관예우의 폐해가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법제도의 공정성’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고 선량한 국민을 좌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은 바로 형사사건에서의 전관예우 관행이다.

전관예우는 구속이나 실형선고 등 형사사건에서 궁지에 몰린 피의자, 피고인들이 비싼 수임료를 내면서까지 담당 재판부나 검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고위직 전관 출신 변호사를 찾게 되고, 전관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담당 재판부나 검찰에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턱 없이 높은 수임료를 챙기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대형 로펌들도 전직 대법관, 법원장, 지검장 등 고위직 법관, 검사들의 인사철이 되기만 하면 수 십억 원의 연봉을 주고서라도 유력한 전관들을 서로 모셔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기도 한다.

형사사건의 경우 전관예우의 폐해는 결과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국민의 인식을 고착화하게 되고, '사법 제도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깊게 한다.

나아가서 법조계 비리의 온상인 전관예우의 폐해는 집권 초기부터 기득권층, 집권세력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치명상을 가하고 궁극적으로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의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의 양극화, 빈부격차 심화 현상과 함께 시장만능 자본주의의 폐해로까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전관에게 거액의 선임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재력가 등 거물급 인사와 그렇지 못한 일반 서민들 사이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계층적 위화감도 갈수록 심각해진다. 결국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능력 있는 전관을 선임하려면 그나마 있던 살림조차 거덜이 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보면 전관예우는 "법치에 의존하는 국가의 정당성 자체, 우리 체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반체제(反體制) 사범에 해당하고, 전관과 현관 판검사 사이의 공생, 유착의 산물인 전관예우는 국가와 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적(敵)"이라는 인식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2016. 5. 13. 조선일보 윤평중 칼럼)

더구나 대기업의 오너나 실세 임원의 경우 수억 원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선임료를 개인 돈으로 지불하지 않고 회사 공금으로 처리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 이는 명백히 별개의 범죄로서 그 기업의 오

너나 임원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는 회사의 공금으로 ‘횡령죄’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어느 전직 대기업 회장은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회사 기밀비 4억원 이상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불법으로 유용한 횡령금으로 조성된 변호사 선임료는 법적인 의미로는 장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는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사실상 의뢰인과 함께 장물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또한 현직 법조인들이 애써 주장하는 것처럼,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의 영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다면 이는 의뢰인을 기망한 것으로 사기범죄에 해당하고, 인신구속에 관한 의뢰인의 궁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겁을 주었다면 공갈범죄에 해당한다.(이 정도가 되면 우리 사회 상위 지도층의 한 축을 이루는 법조계의 윤리 수준은 거의 막장에 이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관예우의 폐해는 수사절차에서 인신에 대한 구속과 불구속, 기소와 불기소에 관한 검사의 재량, 재판절차에서 구속과 불구속, 실형과 집행 유예 등 판사의 양형 재량이 존재하는 형사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므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논의의 초점 또한 형사사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사례 1>

2014년 당시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배우 성 모씨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남편과 별거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씨의 지인은 한 여성지 인터뷰에서 성씨와 같은 유명 연예인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명품 가방이며 고가의 시계, 예물 등을 처분해서 비용을 마련했다고 폭로하기도 하였다.

<사례 2>

2015년 소위 '성완중 리스트'를 남기고 자살한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의 형제들은 장례식장에서 "형님이 변호사 비용을 댈 돈도 없어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 도와줬다"며 "변호사를 늦게 선임하는 바람에 언론 대응이 늦은 것도 형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나마 대기업 오너에 속하는 성 전 회장조차 변호사 비용을 고민해야 할 만큼이었다면 일반인으로서 그 수임료가 얼마인지 짐작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례 3>

2011년 5월 당시 1조원 대의 분식회계와 3600억원이 넘는 부당대출 등으로 은행 고객 등 수많은 일반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를 끼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

재판이 시작되자 분노한 피해자들이 몰려와서 횡령 등 비리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장 등 핵심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모 로펌 소속 전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분노하면서 "비싼 변호사 비용이 다 내 돈이다. 내 돈 내놔라."며 소란을 피우자 변호인들은 재판장 출입문을 통해 겨우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들은 법정을 떠나지 않았으며 그 중 한 피해자는 "25년 동안 파출부 하면서 모은 내 돈 1400만원 내놓으라."면서 오열하였다.

그 후 피해자들은 로펌 사무실로 몰려가서 "내 돈으로 비싼 변호사 사지 마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입구에 드러눕는 등 시위를 벌이자 해당 로펌 측은 "변호사 4명의 사임계를 곧 재판부에 제출하고 변호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례 4> 과도한 수임료에 대한 법원(법조인)의 인식

2014년 7월 '배임수재'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착수금 3천만원을 교부한 다음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약식명령 청구 시에는 성공보수 2억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2억원,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할 경우 1억원' 등 대형 로펌과 성공보수 조건을 약정하였다.

그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약정한 성공보수 2억원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요구하자 로펌 측에서는 피고인을 상대로 성공보수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사건의 난이도로 보아 '부당하게 과도한 수임료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일이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로펌을 선임하기 전 의뢰인이 다른 10대 로펌을 선임하려 했을 때도 비슷한 수준의 비용을 요구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변호사의 경우 검찰 경력이 10년 미만이어서 비교적 싼 편"이라면서 고위직을 지낸 전관들은 수임료가 이보다 훨씬 높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법조계의 여론에 의하면,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고법 부장판사 출신이면 최소 5000만 원, 검찰총장이나 대법관 출신은 최소 1억 원이라고 한다. 또한 검사 출신 중엔 검사장급 이상, 법관 중에서는 고법부장급 이상이 소위 전관 중 '대어(太魚)'로 꼽힌다고 한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 한 건 당 수임료가 검사장급은 1억 원 이상, 부장검사급 변호사는 5000만 원 이상이며, 사건에 따라 2억 원, 3억 원, 또는 수십억 원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이 오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유능한 법원장 출신이나 검사장 출신으로서 로펌 소속이 아니고 단독으로 개업한 변호사는, 개업 후 1년 동안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40억 원 내지 50억 원 정도의 수입은 기본으로 알려져 있다. 더 심

각한 것은 그렇게 몇 년 동안 거액의 재산을 모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대부분 이를 바탕으로 공직선거를 통하여 정계에 진출할 꿈을 꾸고 있으며 실제로 그 뜻을 이룬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비록 일부이겠지만 권력과 재산, 명예 등 한정된 사회적 자원에 대한 그들의 독점욕과 무한한 탐욕은 이미 스스로 제어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사례 5> 전관예우 당사자인 변호사들의 인식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라 해도) 변호사가 사건 변호 대가로 5000만원 받는 것이 정상인가?”(대한변협)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변호사가 그 정도 받았으면 양심적인 것 아닌가?”(대검 간부 출신 변호사)

2015년 9월 법조윤리협의회는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출신 최고일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한 일로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변협의 조사 결과를 두고 법조계에서 과다 수임료 논란이 벌어졌다. 그 중에서 최 변호사가 당시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사건을 착수금 5000만원을 받고 수임하여 검찰수사 단계에서 약 보름간 변론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당시 대한변협 관계자는 최 변호사 단독으로 수임한 것이 아니라, 대형 로펌이 실제 변론하고, 그는 전화 변론 등 '몰래 변론' 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최 전 지검장은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사건을 수임해 수임료가 적다고 하는데, 5000만원이 적은 돈이냐”고 하였다.

하지만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최 전 지검장을 두둔하는 분위기다. 검사 출신 어느 변호사는 “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데, 아는 사람 부탁을 받았다고 해도 5000만원은 많은 돈은 아니다.”거나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5000만원은 엄청난 금액일 수도 있으나, 법조계 관행에 비춰 보면 많다고 할 수 있는 돈은 아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어느 변호사는 “법원이나 검찰 간부 출신이 아닌 변호사들은 200만원이나 300만원짜리 사건도 기꺼이 수임한다. 나도 5000만원짜리 사건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최 변호사는 2013년 고등검사장급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서 물러나 고향인 영주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퇴직 당시 신고 된 개인 재산만도 119억원에 달하여 검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자산가에 속하였다고 한다.)

* 장면 1

2016. 5. 28.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 장치 오작동 수리작업을 하다 전철에 치여 사망한 만 19세의 젊은이 김 모군이 한 달간 바쁜 일과에 쫓기며 열심히 일하고 받을 수 있는 월 수입은 140여만 원, 사망 당시 그의 소지품인 가방에는 미처 먹지도 못한 컵라면 1개가 들어 있었다.

* 장면 2

지난 5월 최유정 변호사와 홍만표 변호사의 100억 원대, 수백억 원대의 고액 수임료가 밝혀지고 처음 언론에 보도될 당시 홍 변호사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 언론사 인터뷰에서 “나는 변호사로 충실했을 뿐이다. 내 기억에 토요일에도 나와서 의견서를 쓰고 그랬던 것 같다. 나는 주말이고 뭐고 출근해서 밤낮으로 일만 했다.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내 인생은 이제 뭐가 되나. 한탄만 나온다.”고 하였다.(2016. 5. 12. 뉴시스 기사)

다. 전관예우방지 등 법조윤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형식적인 법조윤리교육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그 동안 법조윤리 과목이 형식적인 교육으로 논란되어 왔으나, 현재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법조윤리 교육 자체가 더욱 부실해 지고 있다. 법조윤리 과목은 로스쿨에서 필수과목이나 당장 중요한 변호사시험을 대비해야 하는 학생들로서는 솔직히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법조윤리 과목의 시험은 관련 법규 조항의 해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40문항의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최근까지 높게는 90% 이상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어 학생들도 거의 공부 비중을 두지 않으며 1, 2학년에 미리 응시해서 합격해 두고 있다.)

더구나 현행 법조윤리교육은 법조인의 윤리, 도덕성이나 인성 교육과는 거의 관계가 없고, 법조인의 법률적인 의무와 책임 같은 것에 치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급한 해결 과제인 '전관예우' 문제에 관하여는 거의 언급조차 없다. 그러다 보니 법조윤리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제 '정의' 라는 말만 들어도 두드러기가 난다."는 학생들의 표현도 무리가 아니다. 너무나 형식적인 과목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행 법조윤리 교육은 '변호사법' 해설을 통한 변호사윤리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법관이나 검사윤리는 결다리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까지 변호사시험이 운용된 상태를 보면, 법조윤리 과목은 로스쿨 학생들이 법조의 기능과 현상에 관한 치열한 윤리적 문제의식을 전제하지 않고 대충 문제집을 푸는 방식으로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는 과목으로 인식되어 왔고, 실제로도 그러하였다. 그런데 이는 바로 로스쿨에서의 법조윤리교육의 부실로 이어진다는데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앞으로 로스쿨 재학생이나 로스쿨 응시생 등 예비 법조인의 인성교육 내지 윤리교육에 대한 자성론이 강하게 제기되어야 하며, 향후 법조인력의 원천이 될 로스쿨의 윤리교육 강화가 시급하다. 나아가서 변호사시험에서 다루지 않는 일반 교과목 다수가 폐강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로스쿨이 종전의 사법시험을 대체하여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수험학원의 기능에 만족할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야 할 시점이다.

(2) 소위 ‘전관예우방지법’의 문제

201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소위 ‘전관예우방지법’으로 낸 법안은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등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는 전관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일정 부분 금지한 것으로, 그가 직전 1년간 전관으로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변호사법 제31조 제3항)

이와 함께 판사나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일정한 기간마다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하고, 그 지방변호사회는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서 전관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과정과 처리 결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선임계의 미제출 등 징계사유나 위법성이 발견되면 대한변협 회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변호사법 제89조의4)

그러나 위와 같은 기존의 전관예우방지 대책은 전관예우를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사건 등 모든 관련 사건으로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현재와 같은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과 인력만으로는 처음부터 전관예우가 직접 문제되는 사안을 식별하여 규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고액 수임료와 직결되는 전관예우는 주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한 전관 변호사의 소위 ‘전화변론’이나 ‘몰래변론’이 문제되지만, 이러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건 의뢰인(주로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의 내부고발이 있거나 국회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밝혀내기 어렵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 나아가서 설사 고액 수임료와 관련된 전관예우가 적발된

다고 하더라도 탈세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관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관 변호사에 대한 징계도 과태료 처분 등으로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에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위 사례에서 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최 변호사의 경우 전관예우 등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밝히지 못한 채 결국 대한변협으로부터 선임계 미제출을 이유로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라. 변호사의 상인성 여부(상인이 아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은 민법의 특별법인 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인인가, 다시 말하면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상인인가? 아니면 변호사는 적어도(상행위가 아니더라도)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의제상인'인가?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2007. 7. 26.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변호사의 사무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변호사는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상법상의 '상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의제상인'도 아니라고 선고함으로써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례가 되었다.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의 활동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근래에 전문직업인의 직무 관련 활동이 점차 상업적 성향을 띠게 됨에 따라 사회적 인식도 일부 변화하여 변호사가 유상의 위임계약 등을 통하여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그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생겨나고, 소득세법이 조세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사정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변호사를 상법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

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변호사는 의제상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07.26. 자 2006마334 결정)

무엇보다 변호사의 지위를 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조, 제2조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변호사 윤리규칙 제2조에 의하면, ‘변호사는 권세에 아첨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에 있어서도 호화와 사치를 피하고 검소한 생활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행위를 하는 장사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관 변호사가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박한 상태에 있는 의뢰인의 처지를 이용하여 장사꾼보다 더 악질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일반인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고액의 수임을 받아내고 있는 우리 법조 현실에는 수임료의 상한을 제한하는 등의 특단의 방법이 강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2015년 5월 서울지방법변호사회에서 소속 회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조브로커’에 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735명 중 약 88%가 법조브로커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전체 법률서비스 시장의 30% 내지 40%가 법조브로커를 통해 수임이 이루어진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법조브로커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분야는 형사사건이며 법조브로커에게 주는 리베이트는 전체 수임료의 3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와 같이 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제를 도입한다면,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수임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수임료 약정의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약정이 무효이고, 의뢰인이 상한 초과 부분을 이미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그 초과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하고, 해당 변호사에게는 현행과 같이 변호사단체의 과태료 부과 등 자율적인 징계처분을 하게 된다면 굳이 전관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운위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마.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무효에 관한 대법원판결

지난 2015. 7. 23. 가장 보수적인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형사사건의 수임료에 관한 가장 획기적이고 또한 진보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형사사건의 경우 그 액수의 과다 여부를 불문하고 성공보수의 약정은 민법 제 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임)를 적용하여 무효라고 선언하였는데, 대법원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사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실현을 그 이상으로 한다.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는 국민의 자유, 재산, 명예는 물론 사회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직결되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둘러싸고 국민들 사이에 불신과 불만이 존재한다면 국민들의 준법의식과 정의 관념에 혼란을 가져오고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초래함으로써 국가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직접 헌법에 규정될 정도로 변호인은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과 각종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해 주는 법적 장치가 바로 변호사제도이다. 따라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형사절차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공적 이익을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의 한 축으로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여야 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다.

3) 국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법연수원제도를 통해 사법연수생을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등 변호사 양성비용을 부담한 것도 이러한 변호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4) 변호사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수는 수임인인 변호사와 위임인인 의뢰인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서 당사자의 생명, 신체의 자유, 명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다른 사건에서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보수는 단순히 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대가 수수관계로 맡겨둘 수 만은 없다.

5)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약정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개별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질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불기소, 약식명령청구, 불구속 기소, 재판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청구의 기각 또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석방이나 무죄·벌금·집행유예 등과 같은 유리한 본안 판결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보수약정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형사절차의 요체이자 본질에 해당하는 인신구속이나 형벌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만약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수사방향이나 재판의 결과를 '성공'으로 정하여 그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합의가, 형사사법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성·염결성이나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공적 역할과 고도의 직업윤리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국민들이 보편타당하다고 여기는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형사사건의 통상적인 성공보수약정에서 정한 '성공'에 해당하는 결과인 불기소, 불구속,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석방, 무죄판결 등은 변호사의 노력만으로 항상 이루어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변호사의 노력만으로 '성공'이란 결과가 당연히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는 의뢰인으로서도 성공보수를 약정함으로써 변호사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라도 사건의 처리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기대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로 인하여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연결성을 의심받거나 심지어는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수사·재판의 결과마저도 마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따른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만들어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실추될 위험이 있다.

더구나 변호사가 구속적부심사청구, 보석신청 등을 하여 그에 대한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석방결정을 조건으로 의뢰인으로부터 미리 거액의 성공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이러한 의혹과 불신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처럼 수사와 재판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연고와 정실, 극단적으로는 '돈의 유혹이나 검은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국민들이 의심한다면, 그러한 의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법치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고,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연결성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어떤 행위가 이와 같은 사회적 폐단을 초래할 요인이 될 수 있다면 이는 형사사법에 관한 선량하고 건전한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7) 아울러 형사사건에서 일정한 수사·재판결과를 '성공'과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만약 '성공'에 해당하는 수사·재판결과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모면한 것이라면 사법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반대로 그것이 당연한 결과라면 의뢰인은 형사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되었다는 억울함과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피해자·고소인을 대리하면서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을 성공의 조건으로 내세운 약정의 경우에는 국가형벌권을 빌려 '남을 구속시켜 주는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불합리함이 더욱 드러나게 된다.

8) 또한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의 한쪽 당사자인 의뢰인은 주로 인신구속이나 형벌이라는 매우 급박하고 중대한 불이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기에 이와 같은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소송절차에 대한 경험과 정보도 없는 다수의 의뢰인은 당장 눈앞의 곤경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 과다한 성공보수를 약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사정들로 인하여 의뢰인들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누적됨으로써 변호사는 '인신구속이나 형벌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된다면 변호사제도의 정당성 자체가 위협받게 되고, 이는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와 승복을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

9) 민사사건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으로서 형사사건과 달리 그 결과가 승소와 패소 등으로 나누어지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성공보수약정이 허용됨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의뢰인이 승소하면 변호사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당장 가진 돈이 없어 변호사보수를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도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재판결과에 따라 변호사와 나눌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3조),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을 민사사건의 경우와 같이 볼 수 없다.

* 참고로 위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은, 절도범행을 저질렀다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착수금 1000만 원에 성공보수 1억 원을 약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절도죄는 전통적으로 범인이 돈이 없고 배가 고프 등 생활이 매우 가난하고 어려워서 저지르는 **곤궁범(困窮犯)**으로 취급되었음)

의뢰인(원고)은 그의 아버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사건으로 구속되자 2009. 10. 12. 변호사(피고)를 그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인이 석방되면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변호인이 2009. 12. 8.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시 원고는 변호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의 아버지인 피고인은 보석허가결정이 내려진 후 제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된 후 같은 형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변호사인 피고를 상대로 위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1억 원은 담당 판사 등에 대한 청탁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수익자인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의 불법성보다 훨씬 큰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성공보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경중, 사건 처리의 경과 및 난이도,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는 지나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억 원이 석방에 대한 사례금을 먼저 받은 것이고, 부당하게 과다한 것도 아니어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위 1억 원을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면서 그중 6,000만 원을 초과하는 4,000만 원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무효라고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 이후 기존 법조계에서는 충격과 함께 거꾸로 판결의 부작용으로 형사사건의 착수금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다는

다소 감정적인 비판도 없지 않았다.

더욱이 유감스러운 것은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을 내세우는 대표적인 단체인 대한변협에서조차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고, 기관 이기주의, 단순한 이익단체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한 채 위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계약체결의 자유 침해,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 급등 우려 등을 이유로 위헌적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즉각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을 제기한 점이다.(종래 변호사단체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금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피력해 왔다.)

바. 수입료 제한 제도, 전에도 있었다.

'변호사 수입료 제한' 제도는 우리에게 낯선 제도가 아니다. 구 변호사법 제19조(보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의 보수기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대한변협의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상한선이 각 500만원이고, 민사사건의 수입료 상한선은 승소한 금액의 40%였다.(민사사건도 수입료의 제한이 있었다!)

과거 20년 가까이 유지, 시행하였던 위 변호사법 제19조와 대한변협의 '변호사 보수기준'은 지난 2000. 1. 1. 당시 IMF 경제체제 아래 가격 담합과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위반을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이자제한법'과 함께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폐지되었다. 그 때부터 변호사 보수의 상한제와 이자율의 상한제가 함께 폐지되고 좋은 의미로 자유시장 영역에서 '자율화' 되었다.

그 당시 IMF 경제위기 속에 확산된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따라 변호사 수입료 상한제는 시장경제원리의 위배나 사적자치의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으며 국내진출이 예정된 영미계 로펌의 시간제 보수방식(time charge)과도 맞지 않는다는 등의 논리가 지지를 받고 있었다. 또한 변호사 수임료는 향후 변호사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크게 오르지 않고 안정화 되거나 오히려 낮아져서 국민의 법률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그러나 수임료 상한제의 폐지 이후 (당시 이자제한법의 폐지에 따른 이자율의 급등과 함께) 특히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일반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법조계 내부에서도 전관 출신 변호사와 급격하게 수가 증가한 비(非)전관 출신 젊은 변호사 사이에 법률 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원성이 높아졌다.(전관예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초동의 젊은 변호사들조차 앞으로 변호사 수가 크게 늘어나면 전반적으로 수임료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사건 수임도 평준화 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전관예우가 사라지지 않고 수임료에 따라 변호사 시장이 극단적으로 양분화 되고 전관 변호사들과 일반 청년 변호사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면서 한숨을 내 쉬고 있다.)

이에 그 동안 국회 법사위에서 법조개혁의 차원에서 수임료 상한제를 다시 부활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그 때마다 기존 법조계 단체, 특히 대한변협의 적극적인 반대활동으로 모두 무산되었다.(한편, 똑같이 폐지되었던 '이자제한법'은 IMF 사태를 극복한 이후 당시 고율의 이자에 시달리는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급격하게 변화한 사회경제 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시 폐지되기 전 수준으로 부활하였다.)

*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소속 회원 변호사들 2563명을 상대로 변호사의 소득(세후 월 소득) 불균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월 소득 1000만 원 이상 11.7%,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 38%,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은 50%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월 소득 300만 원이 안 되는 변호사도 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전관예우와 과도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인 정서와 변호사들 사이의 위화감 등을 고려하면, 이 문제를 지나치게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논리로만 다룰 일은 아니다. 오히려 지난 대선과 20대 총선 당시 여야 정치권의 중요 화두였던, 우리 헌법상 ‘내실 있는 경제민주화’의 논리에 부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수임료 상한제는 적어도 2000년 초 IMF 사태로 폐지되기 전까지는, 형사사법 정의를 실천하고 우리 법조의 공공성 기능을 담당하면서 장기간 운용되어 온 특유한 제도로써 세계적으로도 ‘내세울 수 있는’ 한국적 제도였다.

따라서 적어도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위 대법원 판례의 성공보수 금지의 취지에 맞추어 변호사 수임료의 적절한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작금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고통 받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법조 특히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윤리성을 실천적으로 확인하고, 변호사의 직무 수행이 무제한적인 영업의 자유와 최대한의 이익추구 등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사건과는 달리, 위 대법원 판결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송목적의 값’ 내지 ‘소가(訴價)’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변호사 수임료의 원천이 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전혀 창출하지도 않는다.)

사. 법조개방, 두려워 할 일이 아니다.

‘형사사건 수임료 제한’의 도입 내지 부활 문제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우리 변호사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법조계에서는 반대의견이 거의 확고하였다.(특히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법무부 등 검찰 쪽에서 반발이 심하였다. 일례로 2010년 6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변호사법관계 소위에서 당시 황희철 법무부 차관은 ‘수임료 제한 등 사전규제보다는 사후 페널티를 엄격히 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라면서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선진국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전관예우와 같은 심각한 법조비리 문제는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앞으로 국내에 진출할 영미계 로펌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간제 보수(time charge)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책정하고 있고, 국내 법률시장에서도 법무법인들이 대형화·전문화되면서 대규모 사건의 경우 이미 시간제 보수방식이 채택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사건에서 상한제를 두면 국가가 보수규정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양과 질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법률시장 개방에 걸림돌이 되고, 외국로펌에는 상한제를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자칫하면 외국로펌과 국내로펌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시간제 보수방식이란 외국에서도 주로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윤리규정 등으로 통하여 오히려 성공보수의 금지와 함께 수임료의 과도한 책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하 2016. 5. 17. 자 뉴스토마토 <시론> 전재경 박사의 '변호사의 수임료와 성공보수' 중에서 주로 인용)

1969년에 채택된 미국변호사회(ABA) 모범윤리장전에 의하면,
 '변호사들이 당면한 의무는 최고수준의 윤리적 품행을 갖추는 것이다.'
 '변호사는 법조 직업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증진시켜야 한다.'
 '변호사는 합리적인 수임료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도한 비용은 일반인들의 법제를 활용함을 지연시키고 변호사와 의뢰인의 직업상 관계를 해치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이러한 기준을 넘어 불법적이거나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성공보수(contingent fee 불확정수임료)는 오랜 관행이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는 공서양속에 반한다. 형사사건의 법률 서비스는 수임료를 염출할 만한 물적 기초(res)를 산출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대리함에 있어 성공보수를 요구·징수하거나 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다.’

‘변호사는 그가 법원, 입법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근거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거나 암시하지 못한다.’ 등 형사사건의 수임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영국은 미국보다 더욱 엄격하다고 한다.

영국 일반 변호사의 보수 청구권은 ‘일반 변호사 보수령’의 적용을 받으며, 법원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보수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도 그 적정 여부를 사정하게 되는 등 일반 변호사의 보수는 법원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다고 한다. 또한 ‘성공보수는 공서양속에 반하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판례도 있다고 한다.

그 밖에 영국 법조윤리장전에 의하면, ‘전문 변호사도 일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성공보수를 약속·수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영국에서는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이나 불확정수임료(성공보수 포함)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에서는 성공보수가 허용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가 금지되고 이러한 윤리들은 변호사 징계에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 참고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법률 선진국에서도 일찍부터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거나 사법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공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임료의 제한은, 다가올 법률시장의 전면적 개방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법조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더 높임으로써 외국의 대형 로펌에 의한 전관 출신 변호사의 무리한 영입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고액의 수임료 등 국민의 불필요한 사법비용의

증가를 막는 장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역발상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법률제도와 법조문화는 그 나라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인한 사법 불신 및 그 바탕이 되는 전관예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형사사건만이라도, (설사 다른 나라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공보수 금지와 함께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젠가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한국적 법조 문화를 제대로 일구어 나가면서 이를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堂堂한 자세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아. 전관예우, 백약이 무효이다.(탐욕에 대한 제도적 통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전관예우' 및 '고액 수임료'를 둘러싼 '법조 비리' 의혹이 법조계 안팎을 발각 뒤집어 놓자 법원과 재야 법조계가 뒤늦게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한다.

우선 법원행정처는 최근 전국 일선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법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각종 법조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전화 변론'이나 '외부인 접촉' 등의 문제점과 실태도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는 일선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TF 팀을 만들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도 2016. 5. 20. 전국의 회원들에게 '법조 비리 척결을 위한 방안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의견을 취합하였다.

이메일에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과 함께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획기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하고, 수집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법조 비리 척결 방안'을 마련해서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구상하는, 법조비리 해결을 위한 구성원 대상의 의견수렴은 그 동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해 왔던 일로서 새삼스런 것이 아니며, 그 결과 또한 기존의 대책과 다른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2016. 6. 20. 발표된 대한변협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이라는 것도 고액수임료와 직접 연결되는 전관예우의 실태를 애써 외면하면서 판사와 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는 투 트랙 법조인양성제도와 전관비리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 강화 등에 머물러 있을 뿐, 형사사건에 있어서 사법정의를 직접 해치는 고액수임료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수임료제한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난 5월 30일 '평생법관', '평생검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할 사람은 정년까지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대신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관예우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전관을 아예 배출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전관예우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법관의 정년은 70세로, 검사의 정년은 65세로 각각 일치시키고, 정년 이전에 불가피하게 퇴임한 경우 무료 법률상담 또는 무변촌 국선대리, 국선변호 등 공익적 성격의 변호사 직무만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해 변호사 개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다.

그러나 평생법관제와 평생검사제를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은, 아무리 전관예우의 근원적 차단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장

래에 예상되는 불확실하고 막연한 위험을 근거로 당사자들에 대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기본권 침해의 헌법위반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무엇보다 형사사건의 수임료 제한을 통하여 현직 법조인들로 하여금 장래 개업 후 불합리한 수준의 고액 수임료에 대한 기대가 근원적으로 차단된다면 평생법관제와 평생검사제는 부차적으로 저절로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말을 전도하여 평생법관제와 평생검사제를 강제하는 것은 그야말로 견지망월((見指忘月)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우리 법조사회의 전관예우 문제에 대하여 그 폐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그 동안 주로 논의되어 온 것은,

- ①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중심의 법조윤리 교육의 강화,
- ② 판사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개업기간과 장소 제한(개업지 제한),
- ③ 전관 출신 변호사의 유관기관 취업 제한이나
- ④ 대법관 등 법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개업 금지 또는 제한 등이었다.

최근에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속칭 '김영란법'의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이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 나아가서 언론계, 교육계 등 민간영역까지 광범위하게 다루다 보니 음식이나 선물 제공, 축의금액 제한 등 비교적 소소한 규제에 그치고 있어 전관예우와 고액 수임료와 같은 은밀한 형태의 법조 비리를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재판부와 변호인이 연고 관계 등으로 얽혀 있으면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보내는 재배당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런 제도만으로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전관예우를 온전히 막기 어렵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 동안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제도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방안들도 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제가 아니라면,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백약(百藥)이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법관과 검사, 전관 출신 변호사 등 법조인 개인의 윤리의식, 도덕관념, 사명감 같은 허울에 기대어 법조인 스스로 전관예우 방지 등 법조윤리를 지켜나가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점이다.

인간의 탐욕은 스스로 제어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므로 인간 욕망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제도적, 시스템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법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 법조사회 특유의 고질병(고질적인 관행)인 '전관예우' 나아가서 '전관비리'의 관행을 근원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서는,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전관예우 문제는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관예우를 해 주는 현직 법관이나 검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고위 법조인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는 바로 그 보다 후배인 젊은 현직 판사나 검사가 주체가 되어 선배에게 예우하는 것이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전관예우의 폐해는 선후배 법조인 사이에서 끊임없이 순환하게 된다.

결국 전관예우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현직 판, 검사들에 대해서도 장차 자신들이 퇴직 후 개업해서 받게 될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를 없애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 수임료 상한제에 대한 반대론

2007년 대한변협 등 법조단체에서는 당시 국회에서 과다한 수임료가 법조비리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형사사건의 수임료 상한선을 정하고,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동철 의원(민주당)의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

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변호사법 개정안을 보면 ▲변호사 수임계약은 대한변협이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형사사건의 수임료 상한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수임료 상한과 성공보수 금지규정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한변협 등 법조단체는 수임료 상한과 성공보수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으로 심히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양적으로 확장된 변호사업계의 일부 부정적 행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때문에 전체 변호사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규제를 둔다는 것은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개정안의 기본전제인 변호사업계의 과도한 수임료가 각종 법조비리의 근본원인이라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법조비리가 일부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형사사건의 수임료 상한선 제한이나 성공보수 금지가 해결책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1,000명이고, 로스쿨 도입, 법률시장 개방과 같은 현재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는 변호사 사이의 경쟁과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돼야 할 문제'이며, 이러한 제도는 '법리적으로도 계약자유 원칙에도 어긋나고, 공정거래와 자유경쟁을 해하는 것으로 결국 모든 형사사건을 국선화(國選化) 하는 효과를 가져 옴으로써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2010년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변호사법관계 소위에서 중점 논의된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변호사보수 등의 기준에 관한 법안'에 대하여, 상한선을 정해 변호사보수를 제한하는 것은 사적자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률시장개방 이후 국내로펌들이 외국로펌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

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국회 내에서조차 거세게 일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김평우 대한변협 회장은 ‘가뜩이나 변호사업계의 불황으로 변호사들이 먹고살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고액 수임료 문제는 앞으로 매년 3,000여 명씩 변호사가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지면 자연히 해결될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변호사관계법’ 공청회에 참석한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변호사의 수임료 상한선을 법무부장관의 고시로 규제하는 것은 모든 법률사무에 변호사 대리가 의무화되지 않는 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의뢰인의 변호사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매우 크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전관예우나 고액 수임료가 문제되는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 중 극히 일부라면서 이런 논의가 모든 변호사들의 문제인 양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그밖에 과거 변호사의 수가 제한적일 때 수임료 제한 규정 때문에 오히려 변호사들이 상한선까지 보수를 받으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잇달으면서 200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수임료 상한제는 효력을 잃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약 6년이 지나면서 변호사가 급격히 늘어나서 현재 변호사 수 2만 명 이상이 되었으나 흥 변호사와 최 변호사의 경우처럼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엄청난 형사사건 고액 수임료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반대론의 근거는 현실적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또한 변호사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일반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상한선까지 수렴할 것이라는 걱정과는 달리 오히려 수임료가 하향하는 추세이며, 그와 같은 현상은 젊은 변호사의 수를 늘리면서 우리 사회가 기대한 효과일 뿐만 아니라 일반 자유시장 경제논리에 비추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나아가서 '수임료 상한제'나 '사건 수임 제한'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주장하면서 '전관예우는 변호사의 윤리문제라기보다는 현직 판·검사가 재직 중 언젠가는 자신도 개업하여 고액 수임료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전관예우를 없애려면 전체 변호사의 보수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사법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법원과 검찰의 판결과 결정을 온라인으로 전면 공개하고 대법관을 포함한 고위직 판·검사 임명 시에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며 수임료 상한제보다 다소 추상적인 대안을 제시한 견해도 있다.(대한변협신문 2010. 4. 22.자 사설)

그러나 사법정보를 전면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또 다른 법익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당사자가 개업금지 서약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약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직접적,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반대논리에 대하여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보충의견을 소개하고자 한다.(위 판결문에서 인용)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라고 평가하는 것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착수금과 성공보수라는 이원적인 변호사 보수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고,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계약체결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변호사 개개인의 윤리의식이 고취되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며, 전체 변호사 집단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하는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제한은 합리적이고 균형에 맞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사실 여부를 떠나 적지 않은 국민들이 유전무죄·무전유죄 현상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사회적 풍토 아래에서 형사사건

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그동안 형사사법의 공정성·염결성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유명한 법언(法諺)처럼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는 것만큼이나 사회구성원들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법제도나 국가기관도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와 공감이라는 기반 위에 서지 않는다면 존립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수수하는 변호사의 행위 자체가 우리 사회가 변호사에게 요구하는 공공성이나 고도의 윤리성과 배치되고 형사사법에 관한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의식이다. 많은 국민이 어떤 사법제도나 실무관행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면 이제라도 바로잡는 것이 옳다.

이번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대한 보수결정방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형사사법제도의 운용과 변호사의 공적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을 구현하고 선진적인 법률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4. 결론 : 형사사건 변호사 수입료 상한제의 도입

우리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전관예우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에서 유리하게 처리해 주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를 이른다. 인터넷 위키백과에 의하면, 보다 직설적으로 ‘대한민국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판. 검사를 하다가 물러나 변호사를 갖 개업한 사람에게 법원이나 검찰에서 유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려주는 관행’을 의미한다. 이제 전관예우는 우리 사회에서 ‘법조비리’를 대표하는 용어가 되었다. 더구나 형사사건에 미치는 전관예우의 폐해는 급등하는 수

임료로 인하여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는 관념조차 흐리게 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이 '흠흠신서' 서문에서 설파한 바와 같이, 전관예우로 **법조계가 '돈에 흐려져서 살려야 할 사람은 죽이고, 죽여야 할 사람은 살리고서도 태연하고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돈 있는 사람은 전관예우를 받는 비싼 변호사를 사서 검찰수사나 재판에서 빠져 나오고, 돈 없는 사람은 그런 변호사를 못 구해서 감옥에 간다.'는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은 국민적 좌절과 함께 기득권층 및 사회지도층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으며 바로 사회통합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제한에 대한 어떠한 반대 논리보다

- ① 당장 고위 법조인 출신의 '아킬레스 건'으로 인사청문회 등에서 법조인 출신 공직 후보자의 발목을 잡는 전관예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 ② 일부 현직 고위 법조인들과 전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만연하고 있는 '개업 후 단기간에 평생 먹고 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적 탐욕을 억제하고,
- ③ 현직 고위 법조인들의 잘못된 '보상심리'와 타인을 심판하는 '선민 의식'에서 기인하는 귀족주의, 순혈주의, 엘리트주의를 벗어 던지고,
- ④ 이제 법조인 2만 명을 넘어선 시대, 브로커를 통한 전관 출신 변호사의 사건 싹쓸이를 방지하여 젊은 청년변호사들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 ⑤ 궁극적으로는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조인들로 하여금 정의 관념과 직업적 양심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금 형사사건에 한해서라도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도, 계약자유 원칙은 지고 지선하여 무제한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 유지와 공공복리-전관예우의 파타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공공복리 등을 목적으로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적정 수가 제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 상한제, 법무사 업무에 대한 ‘법무사 보수표’ 설정, 각 세무사 사무실에 비치된 세무조정 수수료 요율표 등 전문직업인의 영업행위뿐만 아니라 전기, 통신 등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가 내지 보수, 가격의 제한 제도가 폭넓게 실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법기관의 신뢰 회복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 문제와 이에 파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거의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책 및 나아가서 법조의 사회적 책임을 권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일단 **형사사건에 한해서라도 “수임료 상한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사건에 있어 전관예우 문제는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의 윤리의식에 맡길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판단되므로 이제 수임료 상한제 도입을 위한 입법적 결단이 요구된다. 굳이 'Noblesse Oblige'를 들지 않더라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고 명실공히 소수의 기득권층이며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에서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자기희생적인 관점에서, 보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우선 형사사건에 한해서라도 수임료 상한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위에서 소개한 획기적인 대법원 판결도, 우리 대법원이 모처럼 '사법적극주의'의 관점에서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면서까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무효 등 우리 법조에 만연한 형사사법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단호하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제103조의 해석과 판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차제에 이를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적인 조치가 형사사건 수임료의

제한과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최근 구성된 20대 국회는 전체 의원 300명 중 변호사 등 전관예우와 관련이 있는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이전보다 훨씬 많게 약 16%에 해당하는 49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18대 22명, 19대 13명>, 심지어 국회에서 사법개혁 문제를 다루는 법사위원회에는 전체 구성원 17명 중 법조인 출신이 11명(65%)이고 그 중에서도 판사나 검사 등 전관 출신 변호사만 해도 과반이 넘는 9명에 이르는 바, 그들이 과거의 국회처럼 사법부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기득권층 법조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입장에만 선다면 고액수임료와 연결되는 전관예우 문제의 해결, 나아가서 법조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무망한 일일 것이다.)

<주제토론4>

언론의 사회책임

심재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한국 언론의 사회책임론

심재철 |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언론은 제 2차 세계대전이후로 시장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주위환경에 대한 감시를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아왔다. 예일대 법대 교수였던 헤럴드 라스웰(Lasswell, 1963)은 이외에도 사회 제 세력의 연결과 문화의 전승을 매스컴 시스템의 주요한 기능으로 꼽는다. 여기에 찰스 라이트(Wright, 1959)가 오락을 첨부해 이를 언론의 네 가지 기능으로 여겨왔다.

매스 커뮤니케이션 발달사를 살펴보면, 언론은 의심할 여지없이 사회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순기능과 역기능을 해왔다(Wright, 1974). 주위 환경에 대한 감시기능도 사회적으로 순기능적이지만 미디어 이용자 개인에게는 역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 보도는 시스템 차원에서는 순기능적이지만 특정 국회의원의 다소 일탈적인 질문을 선정적으로 보도해 정치에 대한 혐오나 무관심을 불러올 수 있다 (참고, Putnam, 2000).

언론보도의 자유가 지나쳐 방종으로 흐를 때, 백가지 담론이 발생할 수 있고, 개인에 대한 인격침해를 넘어서 사회통합은 물론 자본주의의 지속적 성장에도 해가 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이러한 혼란을 경험했던 미국도 시카고대 총장을 비롯한 사회 저명인사가 모여서 허친슨 위원회를 구성하고 언론의 사회책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허친슨 위원회가 제시한 언론의 사회책임에 대한 해법은 저널리즘 교육과 연구의 품질을 높여서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취재보도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사항이 없다. 그 이후 반세기가 넘게 미국의 저널리즘 스쿨은 언론보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러한 사항들이 국내에 바로 바로 소개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내외 자본주의 국가에서 성립한 언론보도의 제1 원칙은 “첫째도 정확, 둘째도 정확, 셋째도 정확”이다.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왜 지금 그러한 질문을 여기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심을 하라고 가르친다. 대연각 호텔에서 화재가 나 투숙객이 떨어져 죽어도 그 사람의 이름 석자를 정확하게 보도해야 하는게 언론의 숙명이다. 사실이 정확한 보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다.

저널리즘의 제2 원칙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라”이다. 자본주의 모든 사회현상은 돈과 관계가 있고, 부정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진실의 단면을 드러낼 수 있다. 세계 최대의 특종이란 워터게이트 사건도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이란 두 젊은 기자가 닉슨 재선위원회의 검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다가 진실을 드러냈다.

제3 원칙은 “국민 정서를 파악하라”이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국민정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화로 이양되는 시점에서 터진 박종철 군 사망사건 취재보도도 언론이 국민정서를 파악해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기에 가능했다. 당시 동아일보사가 박종철군 사건 범인축소 은폐조작을 특종 보도했다. 이 때 가판에서 40만부가 팔렸다고 한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러한 가판 판매부수를 무시할 언론사는 한군데도 없다고 여겨진다. 지상파 방송사만 하더라도 국민 정서나 여론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선거 때마다 30억원 이상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제4 원칙은 사회현상의 한 변인과 다른 변인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정확한 보도이다. 사실 인과관계는 과학의 세계에서조차 밝히기 어렵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인과관계를 밝혀서 법제화하는데만도 전인류가 5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다. 따라서 언론보도에는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환상적 상관관계(illusory correlation)이라고 한다. 인과관계가 없는데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방식이다. 언론이 취재보도에서

종종 범하는 오류이기도 한다.

다우니 소가 쓰러지는 모습을 마치 광우병에 걸린 소처럼 보도한 것도 이러한 환상적 상관관계에 대한 오류에 기인한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의혹이 여당의 주장처럼 모두 해소됐다면 당시 언론보도는 대다수가 역시 환상적 상관관계에 대한 오류라 볼 수 있다. 김장관의 이력에 대한 언론의 팩트 체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20대 국회를 뒤흔들었던 여당과 야당의 소비적 싸움이 없었을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언론보도의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예시를 들어보고자 한다 (심재철, 2015). 일종오류와 이종오류는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미디어의 효과가 있는데 있다고 하면 일종오류이고, 미디어의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하면 이종 오류이다. 상당수 학자가 1970년대 미디어의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고, 이는 이종 오류로 판명이 났다. 이종오류보다는 일종오류가 더 치명적이기에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한다.

주위환경에 대한 막중한 감시기능을 생각해 봤을 때 언론보도의 일종오류는 중요한 사건을 중요하게 보도하지 않거나 못한 보도이다. 예를 들면 1997년 말 IMF 경제위기가 터지기 전에 한국은행 금고에 달러보유고가 바닥이 났는데도 이를 문제 삼지 못한 경제보도를 꼽을 수 있다. 또한 2002년 제2 연평해전에서 우리 해군이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월드컵 4강 진입 축제로 이를 중요하게 보도하지 못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제 2종 오류의 피해는 1종 오류의 피해보다는 작지만 역시 국가적으로 쓸데없이 막대한 시간과 재원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종오류의 사례로는 인천 국제공항이 영종도에 설립되기 전의 취재보도를 꼽을 수 있다. 당시에는 주위환경에 대한 감시기능이 너무 지나쳐, 여러 가상 시나리오로 영종도가 국제공항 장소로 부

적당하다는 취재보도가 많았다. 당시 취재기자는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도했기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갖게 됐다”는 우스갯말까지 나왔다. 김재수 장관의 출신 배경이 흠수저였는데 금수저의 부패한 관리로 보도됐다면 이 또한 이종오류에 속한다. 이러한 이종오류를 바로 잡는데도 광우병 사태 보도처럼 상당한 국력을 소비하는 위험이 있다.

언론의 1종 오류와 2종 오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중요한 사회 이슈에 대한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엘리트 매체라고 하는 지상파와 주요 신문사가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에, 이슈를 선점하려는 특정 사회세력이나 이익집단이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을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허위 사실이나 정보가 진실에 대한 제대로 된 규명 없이 사이버 공론상에서 퍼진다. 그렇다면 언론보도의 피해자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참조, 김병희·심재철, 2016).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언론보도 상황에서도 취재보도에 대한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다만 다음의 사항이 판명된다면 사실보도를 하지 못한 언론이나 개인은 바로 공론장에서 퇴장되는 벌칙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나아가 공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취재보도의 제한을 가할 수 없다. 첫째, 언론보도에서 실제적 악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둘째, 취재보도를 제한하는 현존하고 분명한 위험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셋째, 진실에 대한 무자비한 무시가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취재보도에 실제적 악의가 있었고, 현존하고 분명한 위험이 존재하고, 진실에 대한 무자비한 무시가 있는데도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언론사나 기자는 공론장에서 다시 취재활동을 할 수 없도록 징계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언론은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정보 흐름에 의한 사회통제의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그러한 보도 방식이 먹힐 수 있다. 언론도 사회 엘리트의 한 세력으로 사회발전의 동원모델의 한 수단으로 간주돼도 시스템이 작동했다. 그만큼 사회 세력의 힘이 한군데에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 심재철, 1996).

하지만 사회 구성원이 다양하며, 사회 제 세력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충돌할 때는 톱 다운(top-down)식의 언론보도로는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다. 이제 한국의 경제규모도 세계 10위권이며, 사회 제 세력의 이해관계가 같을 수 없기에 이제는 밑에서 위로의 버텀 업(bottom-up)식의 취재보도를 해야 한다 (참고, Tichenor, Donohue, & Olien, 1980).

이를 위해서는 언론사가 시장자본주의 하에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지금 방송시장을 보면 지상파 네 개와 종합편성 채널 4개 그리고 보도전문 채널 2개와 수십개 수백개의 케이블 채널이 경쟁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시장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미디어 정책을 펴야한다. 예를 들면 KBS 수신료 인상을 통해 방송광고 시장을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병희·심재철 (2016). 《뉴스 어뷰징과 검색 알고리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심재철 (2015). 메르스 재난보도 - 일종오류와 이종오류의 사이에서. 《여기자》 제24호, 85-88쪽.
- 심재철 (1996). 전환기의 한국언론. 《신문연구》 제62호, 102-130.
- Lasswell, H. (1963).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ommunication in society. In *Political development* (pp. 327~350).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Tichenor, P. J., Donohue, G. A., Olien, C. N. (1980). *Community conflict and press*. Beverly Hills, CA: Sage.
- Wright, C. R. (1974). Functional analysis and mass communication revisited. In J. G. Blumler & E. Katz (Eds.), *The uses of mass communications* (pp. 197~212). Beverly Hills, CA: Sage.

MEMO

MEMO